

영화진흥법·공연법 개정 의견서

민변 언론위원회

청 원 서

청원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대표자 회장 최영도
(전화 : 02-522-7284, 팩스 : 02-522-7285)

청원취지 영화진흥법(법률 제5129 호), 공연법(법률 제5074 호)의 개정

청원이유 첨부 개정 의견서 기재와 같음

소개의원 국회의원

청원자는 1988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여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 200 여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바,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의 합헌적 개정을 바라와 청원법 제4조 이하 및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위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오니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개정 의견서 1부. 끝.

1996. 12.

청원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도

100
이달의 민변 · 1 / 2 월
합본호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의 개정 의견

1. 개정제안 이유

지난 10. 4.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신한국당은 지난 11. 21., 국민회의는 지난 12. 11. 각각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영화도 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고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제 그동안 타율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표현과 창작의 자유의 확대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며, 여전히 남아 있는 각종 제한들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의 개정은 그 첫발만큼 그 중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내는 것이다.

2. 등급분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

가. 우선 영화의 등급을 분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영화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신한국당이 낸 개정안과 같이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하며,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위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자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안은 여전히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언론의 한 형태인 영화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관여를 인정하면 표현행위를 제약할 위험은 상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관여를 꼭 인정하여야 한다면 국회를 통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 원칙적으로 등급분류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영화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 구성을 지원하는 방식의 입법이 가장 합헌적인 제도이다. 법률에는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위원의 범위를 분야별로 특정,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 즉 영화제작부분, 영화상영부분, 영화제작부분, 전문가부분, 시민·사회단체부분, 청소년부분 등의 형태로 분야를 나누거나, 새정치국민회의의 개정안과 같이 영화계, 방송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학계,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등과 같이 분야를 특정하고 각 분야에서 참여할 인원을 일정하게 법정하는 방안이다.

다. 한편,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협의회'의 구성을 예술원 회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문제이다. 설사 예술원 회장 등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위나.항과 같이 일정한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에서 적어도 몇 명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쿼터제 추천방식의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술원 또는 예술원 회장 개인의 윤리적 수준이나 영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영화의 수준이,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수준이 결정될

101
자료·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의 개정 의견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을 피하여야 한다.

가. 이른바 '전용상영관' 제도는 등급분류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른바 '포르노영화'는 음란물의 배포를 처벌하는 우리 형법체제상 상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삭제없는 완전등급분류제]의 핵심은 형법상의 음란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적 표현이나 잔인한 장면이 과하여 일반 극장에서 상영하기에 곤란한 영화라도 삭제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데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용상영관' 제도의 도입없는 등급분류제는 또 다른 형태의 '검열'로 기능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다.

나. 신한국당의 개정안에서 '전용상영관'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 당연히 일정한 영화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제도적 장치가 '6개월간 상영보류결정'이다. 이 장치를 무기로 영화제작자의 '자진삭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6개월간의 상영보류결정'은 시간을 다루는 영화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공개거부결정'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과거의 영화검열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화등급분류위원회가 영화제작자의 협조를 구할 유효한 수단은 '등급분류권'에 있고, '등급분류권'만으로도 영화제작자나 배포권자에게 등급분류권은 결코 작은 위협수단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제의 의미는 표현매체와 창작물의 하나인 영화의 제한없는 상영을 보장하되,

청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영화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있고, 이러한 제도적 목적은 '등급분류' 자체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등급분류위원회에 '등급분류' 외에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가 표현물과 창작물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등급분류제'의 제도적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회의의 개정안중 '영화진흥위원회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중에서 다른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 상영유보 및 판매유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등급분류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다른 법률의 위반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기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에 '등급분류' 외의 다른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않되며, 나아가 국민회의의 개정안중 '위원회가 상영금지 및 판매금지를 권고하지 않은 영화로서 규정을 준수한 영화가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영화진흥회가 영화업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도 있을 수 없는 규정이다. 영화진흥회 또는 영화분류위원회가 영화업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위협하에 출판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다른 표현물 배포업자와 균형이 맞지도 않는 것이다.

라. 한편, 등급분류제도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적 상영억제인 '검열'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위원회의 등급분류처분에 대한 효과적이고 빠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한국당 개정안중 이의제기에 대한 '협의회'의 결정시한을 30일로 한 것이나 국민회의의 개정안중 '위원회'의 재심결정시한을 15일로 한 것은 모두

10일내로 단축하여야 하고, 이의제기절차 또는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등급분류대상과 이행강제수단

가. 등급분류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기는 하나, 강제수단은 과도한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그런데 과연 제작신고를 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는 행위,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영화의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상영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연소자 유해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가 1억원의 과태료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질서위반행위인가는 의문이다.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한 법률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등 몇 건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2,000 내지 3,000만원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억원의 과태료 수준은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지 않거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영화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지난 1995. 12.에 제정된 영화진흥법에는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범위의 소형, 단편영화와 영화제 상영영화를 사

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신한국당의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소형, 단편영화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 대부분 대규모 영화제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습작형태로 제작하고 있다는 점,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 수량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질것이라는 점,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제작될 것인데 등급분류는 서울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사전에 등급분류를 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 등급분류를 강제할 때 오는 피해는 무척 크다. 따라서 소형, 단편영화에 대하여는 법률로 등급분류대상에서 분명하게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 단편영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영화과에서 제작한 영화도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만, 신한국당의 개정안 입안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시도는 영화제작기술의 발달로 습작형태의 소형, 단편영화가 교육기관에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있지 않은 수많은 일반 영화계 지원자들에 의하여도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소형, 단편'이라는 형식적 기준외에 어떠한 기준으로도 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제작되고 있는 등급분류가 불필요한 영화의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범위의 영화를 법률로 분명하게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서

민변 언론위원회

1. 들어가는 말

신한국당은 최근 박종웅 의원이 발의한 가칭 "청소년 보호법안(이하 '본 법안')을 국회 문공위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시킬 예정으로 있다. 본 법안은 청소년을 음란, 잔인한 매체물 등 모든 종류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와 국민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창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발의되었고, 그 입법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인지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의 개입을 요구해 온 몇몇 시민단체들과 우리 사회의 일부 도덕론자들,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지상목표로 여기고 있는 중산층 기성세대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본 법안을 재독, 삼독할수록 본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하여 대단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검열의 주관을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기관의 전권에 맡기고자 하는 것인 바, 본 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대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따라서 본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의 과정없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헌법적 자유

에 대한 위협의 정도 또한 그만큼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이 현재까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본 법안이 내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 여, 야의 급박한 정치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여지고, 더불어 본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의 표명이 자칫 본 법안이 내세우는 대의명분 자체에 대한 반대로까지 비치게 될 것에 대한 기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성 문화나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선적 이중의식 또한 본 법안에 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에 대하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목적이나 명분의 정당성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그 침해되는 권리와 비교형량에 대한 아무런 진지한 검토 없이 입법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침해의 대상이 의사표현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와 같이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경우에는 그 입법의 조심성이나 섬세함에 대한 요청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본 법안이 그 발의의

과정과 법안 내용의 양 측면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 우선 우리는 본 법안이 특별히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에 일환으로 매체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라는 입안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본 법안의 실질적인 규율 대상이 매체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나.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에 본 법안은 매체물과 약물,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이나 영업소 등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매체물 외에 약물이나 영업소에 대한 규제 부분이 본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그리고, 그나마 약물이나 영업소에 대한 규제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의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종전까지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던 바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규제를 위해서라면 굳이 위와 같은 법안을 다시 만들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또한, 본 법안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1차 성안되었던 지난 9월 당시만 해도 본 법안의 명칭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던 것을 보면 당초 본 법안의 입안 의도가 매체물의 규제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 그런데, 지난 10. 4.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원이라는 현재의 결정을 기폭제로 하여 사회 전반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자, 본 법안이 당초 목표하였던 매체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반대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안의 명칭에서도 "매체물규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안 내용에 매체물 외에 약물이나 영업소에 대한 3개의 조항을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3개 조항과 만화 등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법안은 매체물규제만을 목표로 했던 1차 법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 결국, 본 법안의 내용과 본 법안이 청소년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본 법안이 실질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매체물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따라서 본 법안의 적절성 여부는 무엇보다도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문제에 그 중점이 놓여있는 것이다. 반면, 본 법안 내용 중 약물이나 영영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그 부분들의 내용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말하자면 없다고 하여도 종전까지 적용되어왔던 다른 법률들이 있는 것이고, 그에 더하여 다시 본 법안 내용과 같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만큼의 심각성은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매체물에 대한 규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입법근거의 정당성 검토

가. 본 법안의 입법근거

우선, 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본 법안의 입법을 위한 근거가 그 자체로서 명확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

다. 본 법안의 입법취지를 간명하게 말하자면,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적절하고 유효한 입법안이 되기 위하여는 (i) 청소년 비행과 유해한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ii)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매체물을 규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즉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매체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외에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제외하고 매체물에 대하여만 특별히 규제를 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본 법안의 입법에 대한 형평성과 정당성은 의문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나. 청소년 문제와 매체물과의 연관성

그런데, 첫 번째 전제에 대하여는 본 법안을 발의한 쪽이나 그에 찬동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서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는 "당연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그 인과관계의 문제가 다분히 행동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명백한 해답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의 문제가 심리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된 이론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완전히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주로 미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같이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선정적이고 대중적인 기반 위에 존속하는 국가,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사회 성원간의 정서적 공동의식이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는 사회의 연구결과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인과관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동기라는 내심의 작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는 결국 '추정적인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법안 내용대로 매체물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이 감소할지, 또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매체물 규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측정불가능한 추정적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된다. 그에 반하여 추정적인 가능성에 바탕한 강력한 규제에 의하여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현실적인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본 법안이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매체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이 가능성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본 법안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는 본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청소년 보호"라는 이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의 충돌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할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와의 비교형량의 문제인 것이다.

다. 매체물에 대한 특별규제의 타당성

다음으로, 일단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본 법안과 같은 입법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

에서도 특별히 매체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래서 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납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근거의 제시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청소년 비행의 원인들 중에서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음란, 폭력적인 유해매체물보다는 오히려 입시위주의 반교육적인 학교체계, 빈부격차로 인한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절대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 자체의 박탈과 생활의 불안정 등일 것이다.

그리고, 범정에까지 서게되는 청소년들의 변론을 맡는 우리 변호사들의 현장 경험으로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부재와 생활의 빈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유해한 매체물에 영향을 받아 비행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신문에 날 정도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모범생들임에도 비행청소년이 되었으므로 대단히 문제라는 해설 기사와 함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아니 그보다 아예 그 교육체계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주범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도 힘들므로 정부, 여당의 청소년 보호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본 법안과 같은 매체물의 규제를 입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 입법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

우리는 본 법안의 논리적인 전제가 되는 위 두 가지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본 법안은 그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른 모든 입법에 있어서도 물론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나 새로운 입법의 결과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일반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침해적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이 규제하겠다고 하는 유해매체물 만큼이나 선정적인 태도이다. 국민의 감정은 물론 모든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가진 법률이라도 국민 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은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소극적 판단기준이지, 다른 근거의 제시없이 국민이 원하면 모두 입법을 한다는 적극적 판단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근거의 부재를 국민일반의 동의라는 이름을 빌어 정당화하기 쉬운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법근거의 제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 본 법안의 기본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법안의 기본구조

본 법안의 가장 특징적인 기본구조는 두가지 점에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매체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창작을 제한하지는 않겠으나, 그 유통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둬으로써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가능한 한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유해한 매체물인가의 판단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한 각 심의기관(아래에서 살펴듯 각 심의기관의 성격은 결국 행정기관이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본 법안의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볼 것인 바, 그 논의는 결국 본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근본 발상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나. 유통제한의 타당성

(1) 우선, 본 법안이 창작이나 의사표현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야 사후심의의 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전심의의를 유도하여 검열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겠지만(사후에라도 언제든지 심의대상이 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체물 전부를 수거하여 다시 표시의무나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체물 전부가 폐기될 수도 있는 경우, 출판업자 등 당해 매체물 사업자의 입장에서 자진하여 사전심의의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법논리적인 측면에서 검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점에서는 최근의 영화법에 대한 현재 결정이 본 법안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여하튼 종전까지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발상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본 법안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도 없다고 주

장한다. 아마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 제국에서도 음란물 등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진열 등도 분리하여서 유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본 법안이 규정하는 유통 제한 방식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본 법안의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비교법적인 근거는 적어도 본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인 음란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체계와 사회체제가 상이한 외국의 예에 대한 상당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즉, 원칙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제국의 경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상영, 배포,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까지 음란물에 무조건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통(음란물도 창작과 표현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란물이 아닌 것 중에서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유통이 제한될 정도의 음란물은 아니지만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다한 매체물의 경우 그것을 청소년이 구입하여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의 판단이나 부모들의 교육, 다시 말해 그 사회의 문화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음란물"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제작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유통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이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음란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법 제243 조가 규정하는 "음란한 문서 등"의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 법안은 음란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특정하여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되, 그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을 제한한다고 하는 의미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청소년에게는

일용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체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본 법안이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음란 매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법체계상 음란의 의미는 위 형법 제243 조가 의미하는 음란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란물이 아니다. 다시말해, 음란한 것은 아니되 다소 성적인 표현이 심한 경우를 음란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하여 다시 유통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의 경우에도 음란물의 유통을 제한한다고 할 때의 그 음란물은 우리법 하에서 아예 어떠한 경로로도 합법화될 수 없는 음란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 법안이 유통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란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물론,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한다는 것과 실제로 유통되지 못한다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범법행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유통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유통된다는 것과 본 법안을 입법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동일시하여 외국의 예를 들어 본 법안의 유통 제한 시도를 정당화하기는 힘든 것이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외국의 유통제한 예와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유통 제한의 내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성학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음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체물의 유통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통이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의 경우는 그것을 청소년이 보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물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는 다시 사회문화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나 이는 법률적인 강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 중에서 다시 그 내용의 등급을 나누어 다소 성적인 표현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어떠한 매체물이 합법적인 것이냐 혹은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자체의 판단에 대하여도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것이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본 법안은 합법적인, 말하자면 우리 기준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 중에서도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나누어 후자의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판단기준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다하지만 음란물로까지는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다소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음란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든가 또는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공익적 가치가 보다 더 우월한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매체물까지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청소년의 경우는 예술성이나 기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성인보다 열등하고 또한 성적 표현에 대한 반응이 보다 더 몰이성적이라는 전제를 의제하여야 하는데, 과연 청소년의 인격과 정서발달 정도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의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 충동에 약하고 정신연령이 미숙하다고 여길 지도 모른다(실제로, 본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는 일부 논자들 중에는 본 법안의 적용대상을 20 세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편견 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 충동에 약하다 아니냐의 문제는 오늘날 대중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청소년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문화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영상, 활자 매체를 보고, 듣고, 읽으면서 성장하고 그 식견이나 정서적 성숙의 정도에 있어서는 성인들과 구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런데도 법이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어 일정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다만 불가피하게 의제할 뿐이다.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는 행위능력이나 선거연령 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정서적 성숙의 문제에 대하여 무리하게 법률적인 의제를 하여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매체물의 내용까지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그 매체물은 음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5) 음란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물론 유통 제한의 방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음란한 매체물이 아닌 경우에까지, 그 내용이 보수성향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다소 성적인 표현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률로 강제하여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제한이 아닌 유통 제한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창작과 의사표현의 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창작과 의사표현에까지 법이 개입하여 그것을 볼 수 있는 연령과 방식을 강제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권력의 행사가 되기 쉽

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에 접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아닌가 하는 따위의 문제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이 개입하여 강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판단은 섬세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청소년 개개인의 개성과 환경과 부모들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그 대응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그 속성상 물개성적이고, 획일적이며 교조적이다. 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아니되며,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문화의 내용을 문제삼는 법률이 그 입법의 의도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낳은 경험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경험은 결국 입법의 내용이 적극적인 장려책이 아닌 이상, 혹은 입법의 규제 대상이 사회전반의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의 저질스러운 매체물이 아닌 이상, 문화적 사안은 법이 개입하기에 적당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법안의 검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들이 충분히 음미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 본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태도는 올바른 입법의 태도가 아니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창설과 실질적인 검열의 문제

(1) 본 법안의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여 그 기구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들은 고위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인정받는 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짐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기관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일정한 유통제한 의무를 부과하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 매체물의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2)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검열기구라 할 수 없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유통제한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4. 10. 4.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본 법안의 경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의사표현의 내용을 심사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사전에 의사표현의 발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검열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모든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게 되고, 그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표시, 포장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그 경우 각 매체물의 발행자들은 유통 중인 매체물들을 모두 수거하여 다시 표시,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강제로 수거,

파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출판사를 비롯한 각 매체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기를 원할 것임은 자명하다. 사전심의 받지 않고 유통을 시켰다가 추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 되는 경우는 매체물을 모두 수거하여 표시, 포장 의무 등을 다시 이행한 후 제한적으로 유통하여야 하는데, 각 매체물의 사업자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실제로 그 동안의 만화 등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전검열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본 법안에 의하여 법제화되도록 되어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그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간행물에 대한 심의권한을 법률로 부여받은 바 없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임의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만화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해 왔다. 그리고, 각 만화대여점에 보급되는 만화에 사전심의필이라는 확인을 받도록 했고, 만약 그러한 사전심의필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나 공보처, 일선 구청, 경찰 등 각 행정기관에의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즉, 경찰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필이 없는 만화를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불량만화로 보고 이를 수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해 만화대본업소나 만화 출판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위협을 공공연히 받았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대본소용 만화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만화를 삭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그것은 곧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권이 사전에 의사표현의 내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검열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조직이 위와 같이 실질적인 검열의 권한을 수십년간 행사해왔는데, 본 법안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이 창설되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제화되어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모든 매체물은 전면적인 검열의 위험, 더군다나 법률적으로는 검열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열이 되는 보다 더 심각하고 방향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4) 본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검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본 법안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검열의 결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현재의 결정이 가장 강력한 대응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법안은 현재가 정의한 검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정당한 법률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위 현재 결정의 취지는 형식적인, 즉 법률적인 의미에서 검열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식적인 검열을 피하기는 방법으로 국가가 의사표현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결정의 요체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조차 검열에 해당되는 법률은 유효할 수 없음이 당연하며,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검열에 해당하는 법률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내용이므로 법익교량의 과정을 통하여 신중히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권에 속함이 분명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공연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이미 공연윤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현재의 판단이 있었는 바,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성

격의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함은 물론이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실질적으로 발표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본 법안은 그 입법의 과정이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5. 구체적 법안 조항의 검토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는 본 법안의 기본적인 구조 및 입법 과정 그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 법안은 전면 폐기되거나 최소한 보다 신중하고 공론화된 검토를 위하여 전면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상에서는 주로 본 법안의 입법 근거와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조항들 자체로도 그대로 입법화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바,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가. 기본용어상의 문제(제2 조)

(1)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매체물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정의하고, 또한 풍속영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본 법안 제2조 제3, 4호: 이하에서 특별히 법령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본 법안의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용어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우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

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고 심의,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그 판단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몇 명의 심의위원(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심의기관 내부의 실무담당 공무원의 판단일 것이다)이 정한다고 하는 것인 바, 청소년의 대표도 아니고 학부모의 대표도 아니고 교육자의 대표도 아닌 그 몇 명의 심의위원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에 따라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법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적인 판단의 내용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본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각 심의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매체물이 일용 성인에게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일 뿐이다. 그런데, 일견 성인들만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의 성인용 매체물이 모두 반사회적인 음란, 폭력물이라는 전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본 법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현한 용어는 "성인용매체물"이라는 용어 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풍속영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을 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위 (2) 항과 똑같은 이유로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용어이다. 비디오감상실은 말 그대로 비디오감상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일정 시설에 대한 심사를 받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러한 영업소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디오감상실이 비교육적인 장소가 된다고 하는 논

리는 청소년들이 비디오감상실에서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지역이 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학교 주변의 뒷골목, 모든 학교의 화장실 또한 청소년유해지역으로 법정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비디오감상실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시설의 사전 심사를 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행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비디오감상실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선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 주변에 폭력배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도로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을 건전하게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 도로지역을 청소년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인 것이다. 당초에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 만능에 대한 중독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본 법안은 풍속영업소를 일률적으로 유해업소로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 풍속영업소에는 소극장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동 법률 제2조, 동 시행령 제2조). 그렇다면, 영화를 상영하는 소규모 극장과 비디오를 대여하고 만화를 대여하는 업소들은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한 법적 용어가 부당한 동시에 극히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는 "성인출입업소" 및 "청소년출입제한업소" 등으로 대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릇 모든 법률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법률 속에 사용되는 용어는 정확해야 하며 그 용어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입법은 심한 경우 '모호하므로 무효'일 수도 있고,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졸렬하고 부적절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본 용어에 있어서의 문제는 본 법안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게 성안되었는 지,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되었는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징표가 되는 동시에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영상산업, 만화산업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이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틈나는 대로 영상산업과 만화산업의 부가가치를 강조하며 그에 대한 장미빛 육성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본 법안의 기본적인 태도는 비디오나 영화, 만화 등의 매체를 대역하거나 상영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바, 그러한 인식의 출발점조차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산업이나 만화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법안이 사용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용어들은 반드시 대체, 수정되어야 한다.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1) 본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도로 규제 조치가 있다면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본조의 규정 내용은 대단히 애매하다.

(2) 단적으로, 본 법안 제25조 제2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풍속영업소 중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위 본 법안 제6조와 제25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풍속영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문제가 된다.

일핏 보기에는 본 법안 제6조에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까지처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6조는 분명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를 때에 비디오대여점이나 만화대여점을 비롯한 풍속영업소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제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 바, 청소년출입제한이라는 규제방법은 이미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결국 현재의 법안 내용에 충실히 따른다면 풍속영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3) 본 법안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적용상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결국 본 법안이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매체물 규제 외에 무리하게 영업소에 대한 포괄적 입법임을 표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 법안이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나 영업소 등에 대한 내용을 무리하게 규정할 이유가 있는 지가 우선 의심스럽고, 만약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다른 기존 법률과의 관계와 서로간의 적용 범위를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제28조 내지 제34조)

(1) 본 법안은 제4장으로 독립된 장을 두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 마디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 사무관장의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위원들의 신분은 고위직급의 공무원으로 보장받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다. 사실상 법안 제29조에서 열거한 다른 모든 사무관장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안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권한만으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들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0조 : 이전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27조에서는 공연윤리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

윤리위원장, 간행물윤리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총 위원 중 최소한 8인 이상의 위원이 위와 같은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법정되었었다. 본 법안 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매체물 전반에 대한 1차적인 음란성, 폭력성, 사회성의 심사를 행정권이 독점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위원회의 사무가 단순히 기술적인 행정적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구성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전권 하에 두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사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는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 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구성을 행정부의 전권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위원회의 업무의 성격은 각계각층의 국민의 평균적 의사를 모두 집결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국회에서 위촉한 추천인단이 추천한 각계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어차피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위와 같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전권으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한 정당이 반수 이상의 위원이거나 추천인단을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심의기준 등 심의 절차와 관련된 조항(제10, 11, 22, 24, 40조 등)

(1) 제10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는 음란, 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상당한 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즉, 위 4 내지 6호의 경우 건전한 인격과 자유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비판적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시절 공운을 비롯한 각 심의기관들이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 준 바 있는 것이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과거의 공운보다 더 경직적인 기준을 적용할 위험조차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그 경우, 건전한 비판의식의 함양이라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교육의 목표가 희생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심의기준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모두 입법화할 수는 없겠으나, 예컨대 음란성 기준의 경우 최소한 "예술적, 학문적 기타 공익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의 성기나 성교 장면, 수간, 강간, 집단 성교, 근친상간 장면 등을 묘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이고 음란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성 기준의 경우에도 무기 사용이나 잔인성의 정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제4조 내지 제6조는 삭제하거나 불가피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도 악용의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1조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종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에 통보하고, 각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매체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법안의 경우 그 각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각 매체물은 그 매체물 고유의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며, 그에 따라 선진외국에서도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에는 확연히 다른 외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의기준이란 결국 표현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각 매체물에 담긴 사상과 의견이라는 내용적인 측면이 주종을 이룰 것임은 분명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매체물의 경우는 그 매체물의 형식 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본 법안이 당초 그 입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폭력, 음란물의 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정권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무엇보다 크다.

공통심의기준의 필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본 법안 제21, 22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 사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매체물의 목록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각 심의기관의 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인적 구성의 동일성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큰 것이므로 사실상 각 심의기관 사이의 심의내용 조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제30조 제4항 참조). 반면, 그러한 서로간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서

도 조율될 수 없는 것은 각 매체물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본조에서처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다시 준강제적으로(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심의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제2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고시 자체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보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표가 됨으로써 당해 매체물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당해 매체물 사업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본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해매체물의 여부는 사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동시에 심의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과 심의를 받은 매체물 사이에, 또한 시간적으로 일적 심의 대상이 된 매체물과 늦게 심의 대상이 된 매체물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고시되는지의 여부와 그 고시 기간 등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그러한 불공평한 현실적 효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유해매체물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는 분명하지 않다. 이미 각 심의기관이나 행정기관 사이에서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 당해 매체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당해 매체물의 표시, 포장 등을 통하여 당해 매체물의 심의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체물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에 비하여 특별히 고시를 하여야 할 행정적, 공익적 필요성도 명백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체물의 고시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제24조는 누구든지 유해매체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신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구태여 법정화하고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유해매체물 신고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간첩 잡는 일도 아닌데 구태여 이와 같은 조항까지 두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제40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는 제38조의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확인행위적 성격을 가진 유해매체물 결정, 확인 등도 당연히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결과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양자를 모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것이 아니고 각 심의기관이 심의,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신청 포함 여부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간행물윤리위원회(제45조)

(1) 본 법안은 그 동안 법적 권한 없이 만화와 소설 등 간행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심의권한을 행사해 온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만화, 사진첩, 화보, 소설 등의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

로 위와 같은 간행물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이 심의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의 각 매체물들에 대한 심의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2) 그러나,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구를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또다시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법전화하여 국고 보조까지 하는 등 비생산적인 심의기관을 비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가 대단히 의문스럽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만화, 소설 등과 같은 매체물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매체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 바, 그러한 매체물들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차피 각 매체물 중에서 따로 이 심의기구가 있는 매체물은 그 심의기구에서 기본적인 심의를 할 것이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외에 위의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면서 전체 매체물의 심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배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3) 만약,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간행물들의 심의를 맡기게 된다면, 한달에도 수천종 이상씩 발행되는 간행물의 적정한 심의를 위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방대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외에 또다시 그와 같은 심의기구를 새로이 법적 조직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기구의 확대이고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반대로 현재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본 법안에 따른 심의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적정한 간행물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므로 본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인 행정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간행물에 대한 심의권한을 행사해 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차제

에 해산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체육부나 기타 행정기관 또한 아무런 근거없는 임의단체의 판단에 공권력의 힘을 실어주어 왔던 부당한 관행은 마땅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미치는 말

가. 지난 1996. 10. 4. 헌법재판소는 가히 우리 사회의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혁명적이라 평가하여도 좋을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와 같은 헌재 결정을 기폭제로 하여 우리 사회는 뒤늦게나마 민주사회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에 대하여 새삼 숙고하여 볼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비단 헌재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영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과 한계, 사회적 책임과 자율적인 자제의 문제, 창의성과 공익성의 조율의 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과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바야흐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적인 원칙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와 같은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민주적 진보를 이룩해 내었고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자유로운 토론과 사회적 함의로 해결해 갈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언제나 일반대중의 수준을 문제삼으며 타율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국가권력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이었던가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한국당에 의하여 국회 문공위에 제출된 본 법안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적 자율적인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청소년보호라는 명분 하에 또다시 행정권에 의한 모든 매체물의 통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물론, 본 법안은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는 경우 초래하게 될 결과는 사실상 검열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하필이면 이 시기에, 언론과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이제 막 확립해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본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너무나도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서 한시도 그 입법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하는 본 법안이 그 동안 몇몇 사람을 모아 놓고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침통하게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본 법안은 우리 사회가 누리게 될, 혹은 누리고자 하는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아무런 원칙없이 무분별한 무질서로 치달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회이므로, 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하여 주어야 하고 또한 그 판단 내용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전제로 한다. 나아가, 본 법안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한 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사회는 아무런 자율적인 원칙을 세울 역량을 가지지 못한 사회인가. 반드시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하여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인가.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의 곤궁함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제쳐두고,

학교가 대입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여 소수의 학생들만을 끌어왔고 다수의 학생들은 방치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를 방치해 두고, 전 국토가 향락업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서 행정권이 매체물만을 규제하면 청소년 비행은 없어지는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보없이 본 법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본 법안의 논리적 전제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

라. 청소년 문제 해결의 본질은 건전한 교육과 풍요로운 환경을 여하히 만들어 주느냐에 있는 것이지, 매체물을 규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참다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불건전한 문화가 넘쳐흐르고 있다면 특정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는 매체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본 법안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중대함에 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유만으로도 전면적으로 폐기되거나 보류되어야 할 법안이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자율적 의사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실질적인 검열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다. 나아가,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 우리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발전에 어떠한 역기능을 할 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법률인 바, 그러

한 위험성을 포함한 채 그대로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도 본 법안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호도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차단시킨 채, 매체물들만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적, 절차적 선행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본 법안의 입법시도를 전면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는 보다 전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원인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시아 태평양 NGO 인권회의의 참가기

손 광 운

1. 국제인권

나는 작년에 미국 하버드에 있을 때 한 학기 동안 국제인권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하버드 로스쿨 내 Human Right Program의 소장으로 있는 Henry Steiner 교수였다.

선택 과목임에도 약 100여명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한 것을 보면 인기 강좌였던 것 같다. 교재는 그가 최근에 발간한 1200여 페이지의 '국제인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 때 인상 깊었던 것은 강의때 교수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수강하는 학생들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국제인권 자체가 지니는 다양성과 약한 규범성에서 비롯된 탓도 있기는 하지만 내 격론을 이끌어 내는 솜씨가 무척 부러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의 듣는 학생들 면면히 국제관계를 다루는 과목 다웠다. 반이 미국학생이고 나머지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이뤄졌다. 강의 때 나이지리아 인권운동가가 사형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이지리아에 온 학생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이 내가 국제인권과 관련한 유일한 경험인데 그 경험이 이번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인권 회의에 참가하게 했다. 무엇이 어떻게 이뤄지고 논의되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슈타이너 교수의 책만 가지고 갔다.

물론 여러분들 예상대로 그곳에서 정독하거나 참고할 기회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2. 인도

인도는 간디의 나라이고 힌두교의 나라이다. 출판인 홍신자가 뉴욕에서 인도로 가 도사될 곳이기도 하다. 소설가 강석경이 '숲 속의 방'을 쓴 뒤 수년간 머물렀던 곳도 인도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카스트 제도가 잔존하는 곳, 소가 많은 곳, 제3세계의 선두주자로서 미국과 맞서는 곳, 이것이 내가 아는 인도였다.

6년 전에 인도에 간다고 여행 경비를 완납했는데 재판 때문에 못간 적이 있다. 그 이후 언제나 호기심 속에 아쉬움을 지녔던 터다 그런데 민변에서 인권회의는 인권회의인데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솔직히 국제인권도 관심이 있었지만 미지의 나라 인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컸음을 고백한다.

3. 경과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경위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 뒤에 지역단위 차원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차례 준비모임 끝에 94년 5월경 발콕에서 최초로 NGO 인권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180여개 단체에서 240여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NGO끼리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각 지역 및 주제 분야에서 선정된 7인이 기획위원회(Facilitating Team)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East-Asia지역은 인권협의 이성훈씨가 위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95년 11월 서울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권회의가 열려 아시아내 NGO 대표들이 다시 모여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방콕과 서울 모임의 성과는 각각 "Our Voice"와 "The New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in the Post cold War Era"의 제목의 출판물 발간으로 이어졌다. 지난 방콕회의에서는 2년 뒤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결의했던 것인데 그 결의에 따라 이번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에서의 모임은 한국인 특유의 치밀한 기획력과 내실있는 발표등으로 아시아 NGO 사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으로 안다. 이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North-East Asia 지역을 대표하는 기획위원을 별다른 이견 없이 쉽게 한국의 조용한 변호사를 선출한데서도 잘 알 수 있었다.

당시 조변호사는 시사저널 사건 탓에 부득히 불참했는데도 잠재적인 경쟁자인 일본대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참가

회의는 96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 소재 함다스 대학에서 열렸다. 나는 비행기 사정 때문에 대회 하루가 지난 12월 7일에도 착하였다. 그때 이미 한국에서는 인권협의 이성훈씨, 영국 켐프리지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조시연씨가 와 있었다. 그리고 뉴델리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1년동안 계시던 방통대의 강경선 교수가 현지에서 합류하였다.

끝날 때까지 대략 200여명이 참가했는데 100여개의 NGO에서 참가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참가자

중 절반은 인도내의 NGO 사람들이었다. 부탄이나 티벳 NGO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보다는 뉴델리에 근거를 두었는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여 배포하면서 참가자 모두에게 일일이 접촉하여 자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눈의 띄었다. 나는 일찍이 하버드에서 그들이 여러차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본 바 있다.

이와같은 끊임없는 NGO의 활동이 세계정치무대에서 자국의 문제를 주요의제로 만드는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티모르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도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참가자는 전혀 없었고 일본에서는 겨우 1명만이 참석하였다.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제인권활동의 중추가 한국임을 다시 실감하였다.

5. 회의

회의주제는 3년전에 열린 방콕회의와 거의 비슷하였다.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 여성의 권리신장, 국가보안법 상의 인권침해, 아시아 NGO의 활동중대방안에 대해 분과별로 소회의를 갖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회의 마지막날 총회에서 각 주제별로 결의안을 내어 의결하였다. 아울러 스리랑카, 티벳, 나가란드, 바마, 동티모르, 홍콩, 중국, 레바논, 팔레스타인 대표들이 자국의 인권 상황 등을 설명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Congress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방콕, 레바논등 남아시아 등지에서 성행하는 어린이를 이용한 마약거래, 인신매매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막바지까지 회의 개최여부가 불

투명 했는데, UNICEF 등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지원아래 개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들 문제를 다뤘다는 뒷얘기도 있었다.

회의는 매일 오전 9시경에 시작되어서 저녁 9, 10시에 끝나는 강행군이 계속되었다. 여러번 국제회의에 참가했지만 아마 나로서는 생애 처음 열심히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고 참가했던 행사로 기억한다. 그리고 뭉니뭉니해도 이런 회의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은 각국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받은 명함 수를 세어 보니 대략 60여장 이상이 되었다.

나와 함께 방을 썼던 인도 친구는 96년도 세계 미인대회가 열린 방글라에서 왔는데 이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오면 공짜로 인도 여행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다.

이번 회의의 결론은 뉴델리 회의 이후 아시아 NGO를 이끌어 갈 5명의 기획위원을 선출하는 일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1명씩 선출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이 포함된 North-East Asia지역에서는 한국의 조용한 변호사가 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기획위원에 선출되었다.

위 5명의 기획위원들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NGO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각 지역의 문제를 힘을 합해 해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3년내에 세 번째 인권회의 개최준비를 하게 된다.

6. 평가 등

회의기간동안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부터 언급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국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무자 양성 체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UN이나 제네바에 가서 우리의 문제나

이웃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제소하고 의안을 제출하거나 알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의 문제를 정부가 참여하는 인권회의 등에 참여하여 정부 보고서를 반박하고 상황의 개선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호소하는 활동을 누가 어떻게 할것이나를 생각해 보면 갑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 쉽게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UN등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등이 매년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기타 인권단체 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각자의 취향과 전공에 따라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연구되었으면 한다.

나는 비록 이번 회의에 참관인 수준으로 참가하였지만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아픔까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참가자들의 마음 자세가 너무 넉넉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군사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을 한층 활용하면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다른 나라의 인권 개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여전히 우리도 양심수 구속이나 국가보안법의 잔존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폐쇄이용자그룹(CUG) 폐지 제안서

민변 정보통신위원회

편집자 주 : 모임에서는 1996년부터 정보통신위원회 주관 아래 한국의 대표적 통신서비스인 천리안(DACOM)내에 폐쇄이용자그룹(Closed User Group)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작년 1년간 통신운영 결과 운영을 유보 혹은 중단하기로 하고 1997년 2월 5일을 기하여 폐쇄신청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통신운영에만 치중하여 오던 활동에 대해 정보통신영역을 '미디어'의 하나로 보고 통신관련 고유의 운동으로 그 활동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폐쇄와 전환에 관한 의견서이다.

1. 폐쇄이용자그룹 개설 취지

우리 모임이 천리안내 폐쇄이용자그룹(CUG)을 개설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정보화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권 단체로서의 민변을 홍보하며, 모임이 축적하여 온 각종 활동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자료 구축을 꾀한다는 것에 있었음. 1995년 말 경 몇몇 회원이 이러한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내 정보 제공자(IP)또는 활동 그룹으로서의 활동 제안'을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원재회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위원회가 발족, 논의를 거친 끝에 1996.2. 경 천리안내 폐쇄이용자그룹을 개설하기에 이룸

2. 이용 경과와 현황

가. 이용 회원

개설 당시 가입 회원(ID 기준) 약 37명에 이르던 가입 회원이 정보위와 사무국의 가입 권유와 교육활

동등으로 약 60명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한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약 80여명의 회원이 CUG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1996.12.31.현재까지 단 1건의 자료라도 게시한 회원은 약 15명에 불과하며 그중 정보위 소속 위원 5명과 사무국에서 올린 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나. 자료 게시 현황

1996.2. 개통이래 집행위 소식 27건, 주간민변소식 36건, 자유게시판 54건, 정보게시판 43건, 사법촌평 5건, 토론실 13건, 자료실 136건 등이 올라와 있음. 이를 합산하여 보면 314건으로, 10개월동안 평균 1달에 30건 정도가 게시되었으며 그나마 위 자료 중의 90% 이상이 민변 사무국에서 올린 것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료 게시와 이용은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됨.

다. 자료 조회 현황

자료 조회 현황은 이용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유 게시판의 경우 1건당 평균 20회정도이고, 나머지 게시판의 경우에는 1건당 5~10회정도를 밀들고 있으며, 1번도 조회되지 않는 게시물들이 많은 바, 특히 가장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들 대다수가 조회 회수 0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 조회 현황에 비추어 볼 때, CUG를 찾는 회원의 숫자가 1일 평균 최대 3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라.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정보위와 사무국을 제외한 일반 회원들의 CUG이용은 극히 저조하며(사실상 전무한 상태에 가까움),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CUG 개설 취지 중의 하나였던 PC통신망을 통한 민변회원 활동자료 축적, 민변회원들간, 사무국 사이의 수평적, 쌍방향적 의사 소통, 의견 개진 등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3. CUG 이용부진의 원인

가. 회원들의 PC 이용 수준

대다수 민변회원들의 PC 이용 정도가 일상적으로 PC통신망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 교환하고 소식을 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이를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에도 이를 가버어 평가하였음. 물론 약 10개월간에 걸쳐 정보위 위원과 사무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신 이용 매뉴얼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였음. 실제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라도 필요한 경우 사무원을 시켜서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변호사가 항상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CUG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각 상설, 임시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료들을 간사 또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자료화하여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를 각 위원회에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음.

나. 간사의 업무과중

예초 사무국에서 민변내 자료실 정비 및 통신망 운

영을 담당할 간사로 변우성간사를 지원하여 주었으나 새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무국 자체의 업무만으로도 4명의 간사로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면서 변우성간사가 통신망의 관리, 활성화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됨

4. 결론 - CUG 폐쇄 제안

이러한 상태에서 CUG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1달 약 30만원에 이르는 이용료의 부담. 이는 다른 사업들과 활동도나 지원 총액 등을 참작하여 비교해 볼 때 형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임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사무국의 인력이 저조한 활동영역에 투입됨으로서 역량 손실이 오고 있음
3. 모임 회원들의 활동 자료, 정보들이 일관되게 자료화되어 축적되지 못함으로 자료 축적의 가치 자체도 반감됨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개설 당시 언론에서 과도하게 유포하고 있는 소위 '정보화 물결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었던 사업에 착수한 것에 있음. 모임이 현 수준에서 회원들간의 자체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거나 IP제공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능력상 부적절하며, 회원들의 교육과 자료 축적에 몰두하면서 회원들의 PC이용 수준이 향상되는 시기를 기다려 다시 통신망 이용을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정보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모임으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각 회원들의 전산화 교육 및 자료의 정보화, 축적 등은 완수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음.

- 1) 현재 CUG는 폐쇄하며,

2)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인터넷홍보)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며,

3) 지금까지 CUG에 축적된 자료들은 민변 사무 국내 자료실로 옮기고 자료실의 기능을 강화, 향후 민변 통신망이 일정 궤도에 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이 문제는 추후 자료실정비시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4) 지금까지 CUG운영을 맡아 온 정보통신위는 사업의 방향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유지 사업과 함께, 정보화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자료실 운영, 정비 등으로 전환

정보통신위원회확대개편제안서

1. 개산

CUG가 폐쇄됨에 따라 지금까지 모임의 CUG를 관리해오던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사무국내에 두었던 정보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모임내 일반위원회로 그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함.

2. 배경

우리사회의 정보화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이미 우리 사회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 공간이 아닌 새로운 소위 '가상 공간'(Cyber Space)이 탄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 공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사전 검열의 문제 등을 비롯한 기타 인권의 문제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시민 인권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미 대규모의 언론 기업이나 국가 단체에서는 가상 공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미약함(예: 컴퓨터 통신상에 이적표현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이나 한국 통신의 CUG 폐쇄) 이전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위원회에서 대처하여 왔으나, 독자적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문제는 독립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특히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망에서 인권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을 고려한다면 모임내에 별도로 정보통신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음.

3. 활동방향

1. 정보공간의 의미 연구, 분석, 발표 - 교수, 정보공간에서의 활동가 등과 조직적 결합 - 공동세미나, 공동 주제발표(현실과 가상 공간을 병행)
2. 정보 공간에서의 권력 집중 현상(새로운 빈부격차) 방지 모색, 컴퓨터 통신사업 자가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 컴퓨터통신 사업자를 통제하는 방안 - 대항 세력 구축, 제도적 방지책 마련
3. 정보 공간을 이용한 외국 인권 운동 단체와 연대
4.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컴퓨터 통신 - 정보 공간에서 국가의 접근대적인 통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 지원(예 : 한총련 CUG폐쇄에 대한 항고).
5. 중국적으로 정보 공간이 민주적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활동, 연구 등.

한총련 관련 민사소송 소장 요약

백승현

소 장

원고 김 두 연외 4

소송 대리인 윤기원, 박주현, 남성렬, 이유정

피 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원고별로 각 2000만원 청구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지난 1996.8. 연세대 통일대축전행사 진압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이다.

2. 손해배상의 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배경—생략

나. 원고 김두연, 차운선에 대하여

같은대학 선후배 관계인 위 원고들은 같은달 18.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 정문에서 같은대학 동료이자 후배인 소의 차미경을 만나 같은 백화점 지하, 이대입구, 홍대 부근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홍대부근에서 식사를 한후 위

차미경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가에 신촌로타리 부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일은행에서 돈을 찾은후 위 차미경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지하도를 건너 나오는 순간 전경들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전경의 요구에 학생증을 보여 주었더니 갑자기 따라 오라고 하며 위 원고들을 전경버스에 태워 이대부속 초등학교로 연행하였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성명불상의 전경들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는 한편 머리와 어깨 등을 심하게 구타당하기도 하였으나 겁이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원고 김두연은 다시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경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일렬로 줄을 서서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전경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는 한편 이에 원고 김두연이 쳐다보자 "씨팔년 뭐가 잘나서 쳐다보냐. 누가 데모질 하래"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원고 차운선도 마찬가지로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동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경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전경버스 문앞에 서있던 전경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빨리 빨리 타"라고 소리치면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과 두려

움에 떨도록 하였습니다. 위 원고들은 모두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의 불법감금을 당하고 같은달 20. 석방되는 등 전경들에 의해 성폭행, 욕설 등을 듣고,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나이 어린 위 원고들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원고 유해정에 대하여

위 원고는 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달 20. 5:00경 연세대 종합관 6층 어학실에서 전경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과정에서 구타 욕설을 들은 것은 물론 이동을 위하여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일렬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사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전경이 "연대에 있으면서 사수대 애들과 몇번 잤냐, 같이 자면 돈을 준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하더니 위 원고의 가슴을 만지며 꼬집는 성추행을 가하였습니다. 위 원고가 소리를 지르자 "쌍년아,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며 겁을 주는 바람에 위 원고는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주위에는 전경이 수없이 많았으나 누구하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어 건물을 빠져 나오는 동안 성명 불상의 전경이 고무줄을 묶은 위 원고의 머리를 나꿔채는 한편 곤봉으로 머리를 구타하여 위 원고는 심한 두통,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고통 때문에 우는 위 원고를 보다못해 어느 여학생이 "이 여학생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보내주세요"라고 호소를 하자 30대 후반의 경찰이 다가와 위 원고의 머리를 만져 보더니 "이 정도 아파도 안죽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진 놈들도 다 경찰서로 갔어, 정 아프면 경찰서로 가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해"라며 오히려 위 원고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도착하여 여자경찰관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없이 바지를 벗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위 원고는 조사를 받고 같은달 21. 석방되었습

니다. 석방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결과 머리에 내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위 원고는 아직까지 심한 악몽에 시달리는 한편 사람을 만나기가 겁이 나 외출도 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 원고 남해진에 대하여

위 원고는 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달 20. 5:00경 경찰이 종합관 진압작전을 할 당시 연세대 종합관 6층 어학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을 부수며 곤봉을 휘두르며 폭음탄을 쏘며 들어왔는데 어학실내에 유리로 된 칸막이를 마구 부수며 학생들의 머리, 어깨 등을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은 한쪽 구석으로 학생들을 몰아 부치며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하였지만 심한 연기와 최루탄 연기로 도저히 벗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위 원고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다가 전경으로부터 머리를 구타 당하며 "이 개같은 년아 입에 막은 것 다 벗으라고 했잖아"라고 욕을 하여 겁에 질린 위 원고는 할 수 없이 입을 막았던 수건을 내려 놓았습니다. 당시 위 원고 주변에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전경들은 "씨팔년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 빨갱이 새끼들 너같은 년들은 다 죽어야 해"와 같은 욕설을 하였습니다. 6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전경들이 곤봉으로 머리를 5,6회 가랑 구타하여 위 원고는 아직까지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3층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전경이 "야 너 나와 사귀지 않을래, 이 년들아 너네 여기서 사수대와 무슨짓 했어"라고 성희롱을 하면서 발로 차며 곤봉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일렬로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던 바, 성명불상의 전경이 위 원고의 팔을 잡더니 갑자기 손을 뺐어 위 원고의 가슴을 마구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는 이미 수없이 곤봉, 발로 구타당한 후라 겁에 질려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다만 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여자경찰관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펜티와 브레이저까지 벗게 하여 나이 어린 위 원고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달 21. 석방되었습니다.

마. 원고 봉현경에 대하여

위 원고는 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달 20. 5:00경 경찰이 종합관 진압작전을 할 당시 연세대 종합관 5층 강의실에 있었습니다. 약 15명 정도의 사복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학생들을 곤봉이 아닌 쇠파이프로 때리며 한쪽 구석으로 학생들을 몰아 부쳤습니다. 한쪽 구석에 몰려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 발과 쇠파이프로 무차별 구타를 당함은 물론 당시 위 원고 옆에 있던 소외 신유영(원고의 같은 학교 후배)이 고개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신유영을 때리면서 위 원고까지 함께 구타하였습니다. 이 때 소리를 지르는 학생은 소리를 지른다고 다시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30분정도의 구타와 욕설이 계속되다가 위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채 앞사람의 어깨에 두손을 올린채 강의실 밖으로 끌려 내려 갔습니다. 위 원고는 5층에서 4층으로 끌려 내려갈 때 두번, 4층에서 3층으로 끌려 내려갈 때 한번 계단 양옆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전경이 가슴을 만졌 습니다. 그냥 만진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쥐어뜯을 정도로 심하게 만졌으나 아무도 그런 전경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웃으며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는 이미 수없이 곤봉, 발로 구타당한 후라 겁에 질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없이 곤봉으로 구타당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달 21.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 등, 옆구리 등에 멍이 심하게 들어 대중목욕

탕에도 가지 못하였으며 등이 아파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가. 원고 김두연, 차운선에 대한 진압경찰의 행위는 시위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여학생을 불법 연행, 감금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 유해정, 남해진, 봉현경은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작전 당시 연세대 종합관에 있다가 연행되면서 곤봉으로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서 구타당하였고 진압경찰에 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수사과정의 몸수색에 있어도 불필요하게도 바지나 펜티, 브레이저를 벗게하는등 과잉행위를 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특히, 진압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심한 욕설과 가슴부위를 만지고 쥐어잡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진압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진압경찰이 직무수행중에 가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고들의 손해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생략

소 장

원 고 김 남 연 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영 립, 이인호, 김석연

피 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당사사관계

원고 김남연, 김미경, 임철희는 1996. 8. 16.경, 원고 이재현은 같은달 18.경, 원고 채은아는 같은달 20.경 각 성명불상 경찰관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감금당한 피해자이다.

2. 불법연행 및 감금의 경위

가. 원고 김남연, 김미경의 경우

위 원고들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인데 1996. 8. 14. 09:30경 용산구 남영동에서 원고 김미경의 언니가 근무하고 있는 수색에 위치한 유치원에 함께 가기 위해 수색행 142번 시내버스를 승차하였다.

위 버스가 신촌 부근에 있는 이대 후문 맞은편 육교 근처를 지날 무렵 갑자기 버스가 정차하더니 성명

불상 전경 4-5명이 버스로 올라와 버스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위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함)에게도 전경들이 다가와 대학생이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다시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원고들은 수색에 있는 언니에게 간다고 대답하였으나 전경들은 대학생이면 무조건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주민등록증 검사나 하려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원고들이 버스에서 내려 보니 약 4-50여명의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3-4줄로 주변에서 있었는데 전경들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학교 등을 조사하고도 보내주지 않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길 건너편에 있던 학교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모두들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느냐", "전화라도 한통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기하다가 원고들은 11:30경 전경차에 태워져 서대문경찰서로 옮겨지게 되었다. 경찰은 원고들을 위 경찰서 지하식당 바닥에 1시간 이상 앉아있게 하다가 13:00경 원고들을 부르더니 10명 단위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연행자 10명은 경찰 봉고차에 형사 몇 명과 함께 태워져 마포경찰서로 다시 이동되었으며, 거기에서 다시 5명씩 2팀으로 나뉘어져 형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들은 당일 17:00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원고 김남연은 "내가 왜 이곳에 연행되어야 하느냐"고 항의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네가 현행범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원고가 "나는 현행범이 아니며 내가 불법체포되었다"고 다시 항의하였다. 그러자 담당경찰관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나중에 "고시 불 거냐" "미팅은 해보았냐"는 등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원고 김미경도 조사과정에서 "나는 시위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였지만 담당경찰관은 이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 원고에게 "8월 13일밤 연대에서 잠을 자지 않았느냐"고 하기에, 원고가 그날 20:00경에 공연한 연극표까지 보여주며 사실대로 설명하였지만 담당경찰관은 계속해서 위 원고를 추궁하였다. 위 원고를 조사하는 중간에 소지품검사도 하였는데 가방을 조사한 성명불상 여자경찰관은 당일 아침 원고 김미경이 원고 김남연으로부터 받아 개봉하지도 않은 생일축하편지도 뜯어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 김미경이 "편지인 것만 확인하면 되이지 꼭 편지까지 읽어보아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위 여자경찰관은 "어디서 시위하다가 잡혀온 년이 말이 많냐 니가 시위하다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하며 화를 내었다.

조사가 끝난 후 원고 김미경의 담당형사는 언니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더니 "연대에서 시위하다가 잡혔는데 마포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은 착한줄 알지만 자식관리나 잘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에 위 원고가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시위하다가 잡혔냐, 버스타고 가다가 끌려왔다"고 항의하니 담당경찰관은 "왜 또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화만 내었다.

한편 위 원고들이 연행된 당일 17:00경 원고 김남연의 경우 변호사인 부친과 마포경찰서 보호실에서 면회가 허용되었으나, 원고 김미경의 경우에는 같은

시각 언니가 면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들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과 콩보리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감금상태에 있다가 연행된지 46시간 후인 같은달 17. 07:00경이 되어서야 원고들은 석방되었다.

나. 원고 임철희의 경우

위 원고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1996. 8. 16. 17:30경 위 원고(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함)는 과외아르바이트를 하러 일원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3호선을 갈아 타는 지점까지 142번 시내버스를 타고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가고 있던중 시위로 인한 교통체제로 연희교차로 앞에서 내렸다. 원고는 서울은행 신촌지점에 가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을 해야 했고, 또 은행 입금 후 지하철 3호선 역으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하여 당시 통행이 가능했던 연대정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17:50경 연희 교차로에서 연대 쪽으로 가던 중 연대 남문 50미터 지점에서 전경 3인이 불심검문을 하였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에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제시하였더니 확인하고 돌려주면서 다시 가방을 보자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가방을 보여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전경이 "가방 빨리 보여줘"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가방을 열려고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보여주었고 전경들은 손을 집어넣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돌려주었다.

그런데 또 다른 전경 3명이 다가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다시 요구하였다. 원고는 "방금 전에 보여줬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연대 정문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으나 전경 6명은 원고를 에워싸더니 다시 신분증을 내놓고 가방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옆에 있던 최규 탄발사차에서 상관인 듯한 전경이 창문을 열고 "연행해"라고 외치자 전경들은 원고에게 달려들어 팔과 목을 휘어잡고 근처에 있던 경찰 순찰차로 원고를 끌고 갔다.

전경들은 원고의 팔을 쥐어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다. 이에 원고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 항의하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했으나 힘에 밀려 차에 타게 되었다. 원고가 차 안에서 항의하자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우리는 못 태우니까 내려라"라고 말했다. 전경들은 차에서 내려 다시 원고를 끌고는 연희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원고에게 "너 같은 새끼는 구속시켜야 해"라고 욕을 해댔다.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근무경찰은 전경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가방을 안 보여줘서 연행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원고에게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자"고 했다. 이에 원고가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강제로 연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잡혀왔으니 집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 경찰관은 이를 무시하더니 몇 번 더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자식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경 6명은 원고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강제로 끌어낸 후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 원고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집으로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팔로 순찰차 차체와 차문사이를 잡고 저항했다. 그러자 전경 8명과 근무중이던 경찰은 원고의 팔을 비틀고 목을 누르면서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고 뜻대로 잘 안되자 누군가 군화발로 뒤에서 원고의 허리를 건어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머리를 순찰차 뒷 부분에 찍히고 순간적으로 기절하였다.

잠시 졸도한 후에 깨어나 보니 원고는 순찰차 뒤에 타고 있었는데 전경 2명이 팔을 겨드랑이에 끼고 불

들고 있었다. 원고는 팔을 놓으라고 외치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계속 묵살당했다.

순찰차는 18:30경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도착했다. 운동장에 내려 학교 건물로 들어갔다. 거기서 책상에 앉아 있던 안경쓴 사복형사가 "야 이름 뭐야 가방 열어봐"라고 말하기에 원고는 싫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쿵쿵 두드리면서 "여기는 계엄지역이야 임마, 열어보라면 열지 왜 말이 많아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원고는 집으로 연락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원고는 다시 위 고등학교의 교실로 이동되었는데 거기에는 원고보다 먼저 연행된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 원고를 연행했던 전경이 다시 와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기에 원고는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전경은 곤봉을 안경 앞에 들이대고는 "너 죽을래"하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걸상을 발로 찼다. 원고가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자 교실을 지키고 있던 형사가 전경들을 보고 "빨리 해 임마 보고서도 못 써"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전경들은 밖으로 나가더니 3명의 전경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원고에게 달려들어 팔을 뒤로 쥐고 목을 비틀면서 가방을 낚아채었다. 그리고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찾아 체포경위서를 작성한 후 가방을 다시 돌려줬다.

그 뒤 교실 구석에 앉아 있을 때 마침 형사 여러명이 어떤 학생을 수갑을 채워 데리고 들어왔는데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다. 원고가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사람을 때리고 수갑을 채우는가"하고 항의하자 그 중에 한 형사가 원고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고 책상에 머리를 6차례나 찜질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원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교실 담당 형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집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위 형사는 처음에는 이를 묵살하더니 나중에는 원고의 목을 움켜쥐고 구석으로 몰

고 가서 따귀를 3-4차례 때렸다.

원고는 위 장소에서 잠시 더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8명과 함께 19:45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대문경찰서로 보내졌다. 서대문 경찰서 보호실로 가셔도 원고는 담당형사들에게 계속 항의를 하면서 즉시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

22:50경 남대문경찰서 형사들이 원고등 9명을 이송하기 위해 와서 원고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앞사람의 어깨에 양손을 얹고 머리를 숙이라고 하기에 원고가 못하겠다고 하자 남대문경찰서 수사2계 형사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호송차를 타고 가던 중 원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호송차에 탄 경찰관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서울역부근에 와서 "눈 깔어 새끼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원고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였다.

원고가 남대문경찰서에서 도착하자 경찰서 정문에서 있던 외삼촌과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가 뒤따라 오시면서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이온 거냐"고 항의하자 성명불상 형사는 "이 아줌마가" 하면서 어머니를 두손으로 밀쳤다.

원고를 수사1계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남대문경찰서의 형사들은 다짜고짜 원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방을 빼앗았다. 가방을 열고 원고가 대학 원시험을 보기 위해 복사해 둔 "TIME"지를 보더니 형사들은 "이 새끼 순 빨갱이 아냐 번역해서 다른 놈들 선동이나 하려고"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원고의 어머니가 남대문경찰서에 근무하는 먼 친척되는 분과 함께 들어왔는데 원고의 친척은 원고에게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니가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용히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는 남대문경찰서의 형사중 원고를 때린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려오면서 차안에서 때렸고, 그 전에도 경찰한테 많이 맞았다 그래서 협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는 24:00경이 다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

를 조사한 담당경찰관은 먼저 종이를 주면서 주소와 나이 이름 등을 적으라고 해서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위 경찰관은 "뭐 이런 자식이 다있어 빨리 적어"라고 말했다. 그래도 원고가 거부하자 그 경찰관은 원고를 체포할 때 전경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시작했다. 위 경찰관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심문과정에서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사계장이 오더니 "이런 빨갱이 새끼는 죽여야 돼"라고 하면서 원고의 목을 뒤로 쥐은 상태로 1분여간 흔들었다. 그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형사는 "목비권은 빨갱이나 행사하는 거야 임마 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야"라고 소리쳤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은 원고에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로 아나보지"라고 비아냥거렸다.

잠시후 원고의 가방을 가지고 갔던 다른 형사가 들어오더니 종이뭉치를 가지고 왔다. 원고의 가방에서 종이뭉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을 본 형사는 "이것을 연대 안에 배포하려고 했죠?"라고 물었다. 원고는 도서관의 휴지통에서 평소에 이면지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버린 파지를 모아 썼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02:00경이 지나 원고는 남대문경찰서 지하에 있는 태권도수련장으로 보내졌다.

다음날 아침 원고는 담당형사에게 불려가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없었다. 원고는 형사의 물음에 대해 일괄적으로 "목비권을 행사한다고 폭행하는 분위기에서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원고의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원고가 계속 위와 같이 대답하자 담당형사는 몇 마디 더 심문하고 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했다. 원고가 조서를 받아 들고 읽어보니 첫날의 조사에서 목비권을 행사하는

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들쭉날의 조사에서는 원고가 "목비권을 행사한다고 폭행하는 분위기에서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다르게 적혀있었다. 그래서 원고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내게 언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느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람들이 말 안한다고 때리느냐 언제 다른 형사가 입회하였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조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조서의 수정요구를 묵살하였고 원고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담당형사는 그냥 조서를 가져갔고 원고는 다시 지하실로 보내졌다.

잠시후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친구가 면회를 왔는데 원고는 동인들에게 "나는 불법체포되어 여기까지 왔다 목비권을 행사해서 구속될 지도 모르니 밖에서 잘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둘러보았다.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다시 면회를 왔다. 원고는 아버지에게 구속될 지도 모르니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9명의 연행자들은 다른 학생들이 잡혀온다는 이유로 수사1계 사무실로 올라와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맨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야 했다.

그 후 원고는 같은달 18. 16:00경 불법연행된지 46시간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석방되었다. 풀려난 다음날 오후에 원고는 집 근처에 있는 수색정형외과에 가서 경찰관들의 구타로 인한 상처를 확인하고 X-ray 촬영을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찰과상 등을 치료하고 요통약을 받아서 돌아왔다. 또한 사진관에 가서 상처부위에 대한 촬영을 하였다. 그 뒤 며칠 더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3주간 더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이재현의 경우
위 원고(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함)는 한신

대학교 무역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원고는 1996. 8. 18. 14:00경 품질관리사 자격증시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집에서 나와 동네 근처 서점에 갔지만 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주 이용하던 신촌 소재 '홍익문고'로 향하였다. 원고는 그 전날에도 학교친구와 함께 신촌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집 근처 신길역에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영등포구청에서 2호선 전철로 갈아탄 원고는 17:30경 신촌 지하철역에 하차하였다. 원고가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지하철 계단 위쪽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무엇인가 쫓겨서 밀려내려왔다. 원고는 갑자기 내려오는 학생들의 무리에 뒤섞이게 되었다. 곧이어 원고를 비롯한 지하철내의 시민들은 학생들을 쫓아온 전경 수십명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학생들 틈에 끼어있던 시민들은 잔뜩 겁을 먹은채 소리를 질렀고 이어 전경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며 쇠파이프와 곤봉, 주먹, 군화발 등으로 신분확인도 하지 않은채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머리채를 전경에게 잡혀서 지하철 표를 파는 곳으로 끌려갔다. 고개를 숙이게 했기 때문에 연행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행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부도 있었던 듯 "나는 학생이 아니다 얘기엄마다"라는 호소가 들려왔는데 전경들은 이를 묵살하였다. 당시 전경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전경들은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에워싸더니 쇠파이프와 곤봉, 군화발로 집단구타하였다. 구타를 당한 후 원고를 비롯한 사람들은 전철역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끌려가는 와중에도 전경들은 계속 구타를 하였다. 원고가 끌려간 곳은 어느 은행 앞이었는데 경찰은 고개를 들 수 없게 하였고 고개를 드는 사람은 무조건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원고가 끌려간 은행앞에는 원고외에도 100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끌려와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으며 30여분이 지난후 그 부근에 있던 경찰호송차량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었다. 호송차안에서도 심한 구타와 욕설이 계속되었으며 어느 여학생에게는 "얼굴도 못생긴게 데모나 한다"고 치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 여학생이 무어라고 항변하자 전경은 "네가 뜨거운 맛을 못봤구나 너는 이따가 다른애들 모두 내리고 남아라"고 협박하며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 얼마후 원고는 학교 같은 곳에 도착하였다. 계속 고개를 숙이게 했기 때문에 학교라고 짐작할 뿐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신촌 전철역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무릎을 꿇리고 앞사람의 등에 머리를 처박게 하였다. 줄을 못 맞추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원고는 원산 폭격기함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등 모욕을 당하였다.

그 후 경찰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세운 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교 등을 작성하고 손목에 매직 펜으로 크게 번호를 적었다. 원고 역시 불러나가 조사를 받은 후 호송차로 마포경찰서로 옮겨졌다. 마포경찰서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경찰은 머리를 숙이라며 주먹으로 구타하였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마포경찰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10여명 단위로 다른 경찰서에 분산되었는데 원고는 용산경찰서로 배정되어 가게 되었다. 용산경찰서에서 원고는 시위참가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형과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가 신촌에 있는 서점에 불일을 보러 나갔다는 것과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후 같은달 19. 19:30경 석방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오른쪽 옆구리부분과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허리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석방된 직후 원고는 집 근처에 있는 대운병원에 가서 1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를 받을 때 의사는 신장이 다쳐서 소변에 피

가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소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으나 비용문제로 더 이상의 정밀검사는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채은아의 경우

위 원고는(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함) 1996. 8. 20. 15:00경 연희3동에 있는 실내골프장 앞에서 경찰에게 불법연행되었다. 그 전에 원고는 지식의 행방을 수소문중인 연세대 사태 관련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학부모들은 이과대에서 탈출한 학생들이 경찰에게 붙잡혀 연희초등학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을 찾기 위해 연희동으로 길안내를 해달라며 원고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그래서 원고는 학부모들과 함께 연희초등학교에 갔다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연희3동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자식을 찾아다니던 학부모 손인순씨를 만났다. 원고는 손인순씨가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에 탄 후 전방 100m 앞 실내골프장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장면을 보고 손인순씨는 연행된 학생들 중 혹시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위 실내골프장 앞에 승용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렸다. 원고도 손인순씨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학생들을 둘러보던 중 학생들을 연행하고 있던 사복경찰 김태홍(노량진경찰서 정보과 반장)이 원고를 보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경찰들에게 "잡아"라고 소리쳤다.

원고는 갑자기 수십명의 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연행되었다. 원고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시민이다"라며 불법체포에 항의했지만 원고의 양팔을 붙잡은 경찰은 팔다리를 번쩍 치켜들고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연행에 항의하며 발버둥치자 경찰들은 붙잡았던 원고의 다리만 풀어주었다. 원고는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가까운 파출소로 끌려갔다. 원고가 끌려간 파출소에는 이미 수십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줄줄이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앞사람의 등에 묻은 채 앉아 있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위 김태홍은 원고의 가방을 빼앗은 뒤 가방 속의 물건을 뒤져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연희초등학교에서 준 다른 학생의 주민등록증과 호출기(연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웠는데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갖고 있었음), 연세대 사태 관련 학부모 연락처, 학부모들의 호소문 등을 강제로 압수한 뒤 다시 가방을 돌려 주었다.

위 김태홍은 다시 원고에게 종이를 한 장 주머니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였다. 원고는 자신을 체포한 이유와 변호사와 가족에게 연락해줄 것을 요구한 뒤 불법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인적사항의 작성을 거부했다. 그러자 위 김태홍은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뒤 막무가내로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가 다시 거세게 항의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변호사와 가족에게 연락해주겠다고 했다. 원고는 계속 전화연락을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끝내 인적사항의 작성을 거부했다. 그러자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다른 사부경찰들이 "데모하다 끌려온 주제에 말이 많다"고 소리쳤다. 원고는 "나는 데모하다 끌려온 것이 아니고 불법체포되었다"고 계속 항의했다.

위 김태홍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여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묻는 등 원고에 대한 신변처리를 두고 고심하는 듯 하였다. 위 김태홍은 전화연락을 해본 뒤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주었던 체포경위서에 자신이 임의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김태홍에게 무엇을 적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묵살한 채 다른 경찰들에게 연행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었던 연희초등학교로 원고를 연행하라고 했다. 원고는 "언제 풀어주느냐" "나를 어떻게 하려고 붙잡아 두는거냐"라고 재차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아무대꾸없이 원고를 연희초등학교로 끌고 갔다.

연희초등학교로 끌려갈 당시 주변에 있던 학부모

들이 원고를 보고 "그사람은 학생도 아닌데 왜 붙잡아 가는 거냐" "풀어주라"고 항의했지만 연희초등학교 입구를 봉쇄하고 있던 전경들은 오히려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제지하였다.

연희초등학교 내 어느 교실에 들어갔을 때 경찰관들은 십여개의 책상 앞에 경찰관 1명, 학생 1명이 일대일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기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학생들은 교실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었다.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원고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원고는 불법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 원고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조사하던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라고 적었다. 원고는 조사가 끝난 뒤 교실 바닥에 앉아있다가 조사가 끝난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밖으로 끌려나와 전경호송차에 태워졌다. 호송차에 올라타자 경찰관들은 "개새끼들 대가리 처박아" "쇠파이프로 한 번 맞아볼래?" 어떤 새끼가 대가리 들어"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고개를 약간이라도 움직이거나 들면 사정없이 군화발과 주먹으로 구타하는 것 같았다(원고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구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경찰의 욕설과 구타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로 짐작할 수 있음). 또한 원고 옆에 있었던 여학생 한명은 다리를 심하게 부상당해 훌쩍이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 여학생을 치료해주는커녕 "질질 찢다"라며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원고는 당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좁은 차안에서 앞의자에 고개를 처박은 채 1시간 이상을 시달려 했기에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꼈다.

호송차로 끌려간 곳은 동부경찰서였다. 동부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들은 군기라도 잡으려는 듯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한 뒤 일렬로 경찰서 앞마당에 무릎을 꿇린 뒤 한사람씩 이름을 불러 경찰서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경찰은 사람 2명이 누우면 딱 치는 방에 10명도

넘는 사람들을 가득 채운 뒤 종이 한장을 나눠준 뒤 인적사항을 쓰라고 했다. 원고는 계속 작성을 거부한 뒤 앉아 있었다.

원고는 계속 불법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은 물론이고 식사도 거부하고 있었다. 원고는 저녁 8시경 이기욱 변호사와 접견을 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통해 원고가 시위와 무관하게 불법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계속 원고를 불법감금하였고 20. 저녁 원고 최은아를 면회하기 위해 남편 박진원씨(31세)가 왔으나 면회 뿐 아니라 면회는 사실조차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나는 시위와는 무관하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이자 주부이다" "나는 5개월된 젖먹이를 둔 엄마라 애기에게 젖도 먹여야 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나를 붙잡아 두면 어떡하란 말이나" "나는 허리디스크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는 환자"라고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원고는 8. 20.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친 뒤 보호실로 내려와 잠자리로 마련해둔 민원실로 갔으나 연행자들이 너무 많아 누울 공간이 없어 10명이 누우면 폭발 방에 30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편한 잠을 청해야 했다.

원고 다음날인 21. 다시 조사를 받은 뒤 19:00경 석방되었다. 원고는 지금도 당시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났음에도 상식과 진실이 인정되지 않던 그 두터운 벽앞에 절망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또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도 경찰에게 불법체포되고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용되는 현실 앞에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원고는 지금도 호송차로 끌려갈 때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경찰의 거대한 폭력과 그 폭력이 내뿜은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연세대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어 감금되었다. 또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을 강요하는등 현행법으로 취급받았으며, 원고들 중 임철희와 이재현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고의적인 불법적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생략

5. 전치철차 --- 생략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8. 20.(원고 채은아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일시를 통일함)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생략

소 장

원고 이상준 외 6
소송대리인 김응조, 박영배, 이호일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영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들은 모두 학생들로 아래와 같은 경위로
1996.8.13.부터 8.17.사이 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
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대학생들로서 1996. 8. 13. - 15.간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이 주최하기로 한 통일대축전
행사에 직접 참가하던중 또는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
을 만나러 잠시 들렀다가 이를 진압하는 성명불상 경
찰의 투석이나 폭행,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최루탄 기
타 진압용장비를 사용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원고 이상준은 1996. 8. 17. 22:50경 친구인
같은대학 소속 소의 최철 원과 인문관 정문 왼쪽으로
난 도로를 통해서 연세대학 바깥으로 빠져 나가려다
가 건너편에서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소속불상
경찰중대의 방해로 나가지 못하고 인문관 정문왼쪽

의 콘크리트 벤치에 앉아서 건물 바깥 상황을 지켜보
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경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그중
몇명이 원고등 그곳에 모여있던 2-3명의 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친구인 위 최철
원이 위협을 느끼고 피하려 하는 순간 성명불상 전경
이 던진 돌에 맞아 위 원고가 끼고 있던 안경이 깨어
지며 위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
막열상을 입었으며 1996. 8. 18.부터 같은달 27.까
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의
회복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 원고 이영희는 1996. 8. 20. 05:00-06:00간
연세대학교 종합관 6층 어학실에서 친구인 소의 남혜
진의 성명불상 학생 수십명과 연세대학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하여 대책을 상
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투경찰 중대의 진압이
시작되면서 수백명의 전경들이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최루탄을 난사하여
숨을 쉬지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한 다음 위 원
고의 학생 다수가 최루탄가스 냄새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마시기 위하여 어학실 책상 아래 등 곳곳에 엎드
려 있는데도 성명불상 전경들은 폭음탄과 사과탄등
을 마구잡이로 위 어학실내로 던져넣어 그중의 1발이
위 원고의 왼쪽발 부근에서 폭발하게 하고 불이 위
원고의 왼발에 옮겨붙게 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
는 화상을 입게한 것입니다.

라. 원고 류정협은 1996. 8. 13. 19:50경 연세대
학교 정문을 통하여 빠져 나오려고 위 대학 정문 수
위실앞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포진하고 있던 전경들이 위
원고등에게 돌을 던져 위 원고의 상악좌측 중절치,
상악우측 중절치, 하악우측 중절치등을 파절케하고
측절치, 견치등 상실을 상실케하는 상해를 가하였습
니다.

마. 원고 서태호는 1996. 8. 20. 07:00경 경찰들
이 봉쇄를 마치고 최루탄을 난사하여 숨을 쉴 수 없
어 종합관 옥상 바로 아래층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투경찰들은 최루탄 연기로 숨을 쉴수조차 없
어 반항의 여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가득 들어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틈 사이로 수류탄처럼 생긴 최루
탄을 던져 넣어 그중 1개가 위 원고의 오른쪽 발 부근
에서 폭발하게 하였으며 위 원고는 그 파편에 맞아
오른쪽발등에 파편이 박히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
다.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도 진압후 전경
들이 시키는 오리걸음을 2시간 가까이 하다가 22일
새벽에 석방되었으며 수원의료원에 1주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파편을 제거 하였습니다.

바. 원고 방춘배는 친구인 소의 신동호를 만나러
1996. 8. 17.경 연세대학교로 들어왔다가 11:00경
병원쪽으로 걸어나오는 도중에 전경들이 던지는 돌
에 오른쪽 눈위를 맞고 쓰러져 20.경까지 종합관 6층
임시진료소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같은달 20. 06:00경 전경이 진압을 한 뒤 들어와
그곳에 있던 학생 100여명을 엮드리게 하여 위 원고
도 엮드려 있었습니다. 위 원고가 자세가 불편하여
움직인다고 성명불상 전경은 위 원고의 옆구리를 발
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
골골절상을 가한 것입니다.

사. 원고 박노철은 1996. 8. 20. 05:00경 연세대
학교를 빠져나와 연희초등 학교 옆 건물 주차장에 경
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 전경에게 붙잡혀 연
희초등학교 쪽으로 끌려가면서 곤봉과 군화발로 수
없이 구타당하고 연희초등학교 10여미터 전방에 서
있던 성명불상 전경이 곤봉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내
리쳐 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
측 3, 2, 1 및 좌측 1, 2, 3, 4, 하악 좌측 2, 1번 치
아의 파절과 상실, 구순열상등을 가하였습니다. 연희
초등학교로 연행된 뒤 위 원고는 성명불상의 학생들
인 부상자 50여명과 함께 경찰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고 같은날 21:00 송파경찰서에 다시 연행
되어 조사를 받은 후 1시간씩 머리를 숙인채 부동자
세로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같은달
22. 석방되었습니다.

아. 원고 박준영은 1996. 8. 12. 오후 연세대에 갔
다가 그 다음날 09:00 연세대를 빠져 나오려고 하였
습니다. 위 원고는 정문에서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중
이어서 복문을 통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위 원고는 위 대학에 유리온실을 지나 기
숙사 방향으로 걸어올라 가려는데 그곳에서도 전경
및 사복체포조와 학생들이 대치중이었고 전경과 학
생들이 서로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원고가 잠시 어느곳으로 나가야 할지를 판단하
려고 사태를 보고 있는 순간 전경이 직격탄을 겨냥
위 원고는 뒤로 돌아 도망가려한 것입니다. 그때 전
경들이 던지는 돌을 머리에 맞고 그 충격으로 위 원
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성명불상 전경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위 원고에게 계속 돌을 던져 다
시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허벅지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위 상해로 뇌출혈, 고막내 출혈상등을
입었고 왼쪽귀의 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며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든 상

태에 있습니다.

자.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위대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되고 반항을 하지 않는 시위 참가자를 향하여 최루탄 폭음탄을 난사하거나 직접 시위군중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거리에 폭음탄이나 최루탄을 던져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연행해가는 과정에서 곤봉으로 얼굴을 후려치거나 발로 옆구리등을 걷어차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경찰의 이같은 시위진압과정 또는 시위참가자의 연행과정에서 범죄 기타 위법행위로 이 사건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생략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추후 소송의 진행을 보아 확장청구 하도록 하며 우선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등—생략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면서

편집자 주 : 모임에서는 지난 12월 2일 노동법 개혁저지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교수·변호사 거리행진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2월 12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 재야 노동계 상호간에 쟁점이 되어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관련 노동변호인단을 발족하였다. 이 자료는 이 발족식에서 기자회견문으로 제시된 것이다.

기구들이 정한 기준과 규범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애당초 노동법 개정작업을 '개혁' 차원에서 시작한다고 천명하였고 국민들도 기대속에 그 추이를 지켜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에 노동기본권의 확보보다는 기업경쟁력의 강화가 우선시되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최종안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대표적 독소조항들인 복수노조금지 조항, 제3차개입금지 조항,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하며, 나아가 근로자파견제 또한 빠른 시일 안에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부가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측의 요구는 묵살하고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사용자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평가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198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내용은 물론, 6공 시절 노동부의 자문기구로 발족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1994년에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건의안보다도 후퇴된 것이며, 더 나아가 가서 사용자측의 입장에 치우쳤다고 비판받았던 노개위의 공익수정안에서조차 더욱 후퇴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민주화된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시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오히려 역사를 거스르는'

1. 지금 우리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그 내용이 기업측의 요구만을 적극 반영하여 노동법을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올바른 노동법개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2. 이처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와 정부가 전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노동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개혁'이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되어 급기야 실종되고 만 것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대통령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 취지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개약'일 따름이다.

3. 우리는 기업의 성장없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진실로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토대는 정부나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립에는 노사의 균형이 그 핵심적 관건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노사중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은 결국 갈등을 온존, 증폭시켜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노동법개정 추진과정과 여기서 나온 개정안의 내용에서 노사간의 균형이 심히 일그러져 있음을 본다. 이에 그동안 민주화된 복지국가를 염원하여 나름대로 활동하여 온 우리 민변은 노동계가 소외와 절망 끝에 총파업이라는 극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경탄압을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그러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4. 우리는 변호인단을 발족시키면서도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국가경제적 손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정부 및 국회와 노사 양측에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연내에 강행처리한

다는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노동계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정안을 확정짓고 연내에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비극적인 파국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국가경제적 손실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없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애써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계는 직접적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국민들의 여망에 답하는 길이며, 노사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모습은 결국 더 큰 파국의 조짐이라는 역사의 뼈아픈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 시기에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원만하게 수렴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채 초래한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이 시기의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형평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안을 줄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정작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대선 논의에 몰두한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활발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노사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국론을 모아 파국을 막아달라는 것은 국민들의 단순한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인 것이다.

5. 결코 파국을 바라지 않는 일반 국민들과 우리의 위와 같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 강행처리방침을 고수하여, 노동계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정부가 과거 정권의 구태의연한 모습대로 이를 강경진압하여 노동자들이 대량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변호인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피해를 수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 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데에는 노동자들의 노고와 희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파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은, 올바른 노동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시키려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정부가 불법이라고 성급하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리이니만큼 이번 노동계의 총파업 역시 단위노조와 상급단체의 관계,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성격, 노동법 개정문제와 근로조건개선과의 관계와 앞으로 전개될 파업양상에 따라 그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의 개약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

회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출을 설득력없는 형식적 실정법 논리로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6.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염원하는 우리 변호인단은 현재의 갈등이 생산적인 진통이기를 소망하며, 그 발족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하여 노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의 노사관계법이 이 시대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노동법 원리와 국제적 기준 및 규범에 걸맞게 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변호인단이 발족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이 활동할 필요가 없게 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1997.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대표자 회장 최영도

피청구인 국회의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996.12.26. 개의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 내용의 정보(문서).
2. 국회의장이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문서)
3.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개의시간,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지 및 위 본회의 의사일정을 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문서) 일체.
4. 국회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위 본회의 소집을 고지한 것과 관련한 정보(문서) 일체.
5. 위 본회의의 개회시부터 산회시까지 회의록 및 회의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 자료 일체.
6. 의결된 법률(안)을 그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청구이유

1.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을 감시하고 또 반민주적인 법률의 제·개정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1996.12.26. 06:00경 오세용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개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 노동관계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는 것이다.

3. 국회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에 관하여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제72조(개의)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는 "①의장은 개의시간,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만약 1996.12.26 개의하였다는 본회의의 경우 위 본회의 개의에 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오후 2시의 개의시간을 의장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본회의의 개회는 불법이며(국회법 제72조), 또한 의장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더욱이 회의시간조차 의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국회법 제76조)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일부 의원들에게만 통지한 채 본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제123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에 해당될 수 있고, 더욱이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없음에도 또는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국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국회법 제10조,제12조) 마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자제사칭죄에, 또 본회의 의결과정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 및 정부이송서류의 작성 행위 등은 공문서위조죄(혹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 법률(안)의 무효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제기와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오니 조속히 공개에 응해주시기를 바라와 이 청구를 한다.

1997. 1. 3.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국회의장 귀하

정보공개청구서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522-7284)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피청구인 공보처 장관
종로구 세종로 77-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96년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특히 1996.12 중순 정부의 노동관계법(안) 국회제출 및 같은 무렵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계류 이후) 현재 까지 공보처가 독자적으로 또는 노동부 등 타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방송, 라디오, 통신, 케이블TV, 잡지, 영상, 비디오테이프 등에 위 법률(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광고(홍보 및 의견광고 포함. 이하 같다)를 한, 또는 국내외의 광고물(홍보물 포함. 이하 같다)을 작성, 제작, 배포한 것과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의 목적 및 기획, 광고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의 일시와 방법, 광고의 내용, 광고에 대한 비용지출 및 그에 관한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광고물의 작성, 제작, 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물의 제작종류 및 수량, 광고물의 내용, 광고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물의 작성, 제작, 배포 등에 지출된 비용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등 포함)

2. 위 광고에 인용된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원문보도자료 및 그에 대한 번역내용과 각

종 통계자료 등에 관한 정보 일체.

청구사유

1. 귀 처는 1996년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특히 1996. 12. 중순 정부가 노동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이후로서 같은 달 26. 위 법률(안)등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만의 날치기처리로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귀 처 단독으로 또는 노동부 등 타부처와 공동으로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 위 노동관계법등이 "전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위 노동관계법(안) 등의 날치기 입법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거나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등의 허위광고(홍보)를 일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위 노동관계법(안)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등은 국회법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법률이어서 현재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처가 국민의 혈세로 위헌, 위법한, 그것도 사용자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의 법률에 관해 언론매체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귀 처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로서, 귀 처가 한 위 노동관계법(안)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안) 등의 개(제)정 및 그 이후 현재까지의 광고현황 및 그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여부를 조사 및 감시하는데 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바, 조속히 정보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1. 14.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공보처장관 귀하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

사 건 97 형제 구속영장청구 (업무방해)

피의자 권 영 길

신청인 권 영 길

주 거 서울 강남구 일원1동 679 호정빌라트 602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1.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조문

형법 제314조

2. 당사자의 지위와 재판의 전제

신청인은 형법 제314조에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따라 서울지방법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현재 귀원에서 영장의 발부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위헌여부는 영장발부에 관한 귀 법원의 재판에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피의사실의 요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1996.12.26. 새벽 6시 신한국당이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노동관계법안들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파업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서 그 파업을 교사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파업이 일어난 각 사업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4. 형법 제314조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유

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1) 피의자 등에게 적용된 형법 제314조가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위력'이란 "법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53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들이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 즉 구성요건에서 '사람'이란 법인이나 법인격없는 사단 등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단체의 업무

는 곧 그 단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람의 업무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는 "법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이루는 피의자의 위력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당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단체란 그 자체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단체를 이루는 개인과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체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단체를 이루는 개인의 업무가 방해되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부담자, 즉 업무의 궁극적인 주체가 단체일 경우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을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당한, 자유의사를 가진 구체적 사람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개념상 당연한 것입니다.

나. 근로계약과 강제노동금지

한편 기업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는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에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혹은 일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채무불이행 또는 일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강제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원리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헌법이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

만 우편법 제5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1호, 전기사업법 제68조 제2호 등은 노무제공거부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문제되는 급부의 공익성과 독점성 때문에 급부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상대방의 인간적 생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도 문제된 사업체에서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한다기 보다는 공공적 급부를 독점한 사업 주체가 그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급부제공을 거부하여 고통을 주는 것을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자율적인 규율에 맞겨진 문제인 것이며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따로 형사적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즉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무제공거부를 개별적으로 하는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 등이 사용될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 형사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파업과 별개의 위법행위이며 파업 그 자체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거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폭력과 파괴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행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 즉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 역시 개별적 노무제공거부나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제공을 거부하는가 여부를 근로자들 개개인이 전적으로 자의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한, 한 개인의 행위가 그 본질에서 형법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하였다 하여 갑자기 본질이 변하여 위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집단적으로 노무제공거부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5., 82-83쪽; 金淳泰, 업무방해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3.8., 145-150쪽 참조)

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인권의 국제기준

(1) 국제사회에서 국제관습법, 즉 헌법 제6조 1항이 말하는 바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05호, 강제노동폐지조약은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

에 대한 제재"를 강제노동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조 d항).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지 노무를 집단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뿐인 파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법상의 문제일 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인,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파업을 처벌한다면 이는 곧 형사처벌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이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1007호) 제11조가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2)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였다든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예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즉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상으로도 당연한 해석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도 당연히 금지되는 강제노동을 '선진국을 지향하는 노동법을 만들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마당에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문명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동떨어진 야만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마. 기존 판례들의 문제점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은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형사적으로 문제된 경우, 노무거부의 과정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노무제공거부는 곧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가정 아래 유죄를 인정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 즉 파업이 일어난 경우 그 구체적인 양상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기 마련이고 각각의 경우에 파업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가려서 판단을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는 태도이며 형법 제314조를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해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무분별하게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되어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1) 단결권 침해와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를 형법 제314조에 위반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집단적으로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형법상 처벌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단결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여럿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만 혼자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는데 두 명이상이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라는 신분

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군국주의 일본의 노동탄압법으로 도입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는 일본 형법 제233조를 형기만 넘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원래 대동아침략전쟁을 수행하던 군국주의 일본이 업무방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있던 구형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 구형법에서는 원래 '식용물매매 방해', '경매, 입찰 방해', '농업방해', '임금증액 등 방해', '임금감액을 위한 방해'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법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이 침략전쟁 수행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군국주의 일본은 기존의 조문을 바꿔 구성요건을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체의 경우에 대응함으로써 (처벌) 누락의 염려가 없게" 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일본 형법기안을 만들었고 이에 토대를 둔 것이 일본 형법 제233조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그것을 도입하면서 형기를 더욱 높였으니 그 부당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본형법기안의 제정이유인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체의 경우에 대응함으로써 (처벌) 누락의 염려가 없게" 한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이탈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을 금지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김순태, 앞의 논문, 15-22쪽)

(3)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업무방해죄

법리적으로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위계', '위력', '업무', '방해' 등의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행위유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즉 입법

자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를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구성요건을 별다른 어려움없이 구체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행위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34쪽 참조)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이번 파업과 업무방해죄 불성립

가. 피의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자 그대로 양심의 판단을 기초로 한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민주노총에 속한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에 들어간 어느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다수가 파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언은 그 소속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피의자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파업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하라고 한 바

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개념상 민주노총 지도부의 이번 파업선언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는 형법상 위법하지 아니한 근로제공거부행위 단정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4조에 위반된다고 유죄로 인정해 왔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 자체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은 사법상 계약에 위반하여 단순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강제노동폐지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단결 자체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 오며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안에서 형법 제31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제314조는 헌법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 1. 9.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서울지방법원 귀중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

위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혐의사실

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의 요지는 위 피의자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의 간부로서 1996. 12. 26. 새벽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반발하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파업에 돌입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주도의 이 번 파업이 국회에서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응한 것으로서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전제하에 피의자는 민주노총 간부로서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업무방해 내지 업무방해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고 그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번 파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파업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사상 면책될 사항이고, 가사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서 무죄라 할 것이고, 더구나

피의자에게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파업의 정당성

가. 이 번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1)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의 원천무효

1996. 12. 26. 06:00경 오세용 국회의장은 신한국당 소속 의원 15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등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결은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의회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국회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에 관하여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제72조(개의)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는 “①의장은 개의시간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1996. 12. 26.의 국회 본회의는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장이 오세용 국회부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였다는 뚜렷한 근거없이 오세용 국회부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국회 본회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없이 개의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불법이며, 의사일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회의시간조차 야당의원들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안은 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통과하였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문제점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이름으로 소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고, 정리해고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으며, 휴업급여를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이상 근로기준법), 복수노조의 설립시기를 상급단체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하여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1997년부터 인정하기로 하였던 정부안보다도 후퇴하였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고, 개정전과 거의 비슷한 제3자개입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쟁의기간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오히려 개악시키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모든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파업의 불가피성

피의자가 소속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작업에 동참하고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구성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약칭 '노개위')에 참가하여 합리적인 노동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였다. 특히 경영계와의 합의를 통해 노동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자 양보도 많이 했다. 그리하여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노개위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신한국당이 의결한 노동관계법은 노사가 노개위에서 합의한 내용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번 총파업은 각 단위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높은 찬성률을 얻고,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되고 있다.

나. 이견 파업의 성격

이견 파업은 각 개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여 정부에 대해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의 무효화하고 새롭게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강화상의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한편 이견 파업의 목적이 정권퇴진요구 등의 순수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순수정치파업'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다.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학설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크게 세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정치파업은 그 내용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정치파업위법론이다.

둘째,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참여를 통한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대에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도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된다는 정치파업적법론이다. 이 입장은 특히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회전반의 여건 변화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사항 중에는 순수하게 정치적 성격만을 갖는 것 외에도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쟁의행위가 권리로 보장되기 이전에도 실제로도 정치파업이 많이 행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쟁의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특별한 유보나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쟁의권의 보장에서 정치파업을 특별히 배제한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정치파업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반면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정치파업이분론이다. 이 정치파업이분론이 우리

나라 노동법 학계의 다수설이며, 일본의 판례례 중에도 이 학설에 입각한 것이 있다(七十七銀行事件 善地判 1970. 5. 29., 「勞働判例大系」 제15권, 84-85쪽; 川口市立縣陽高校事件 浦和地判 1973. 3. 12., 「勞働判例大系」 제15권, 86-87쪽).

만드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과의 투쟁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국가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의 설정, 적극적인 고용정책, 노동기본권의 규제 등 점차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만드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들은 정치권과 밀착하여 충분한 압력을 행사함에 비하여 근로자들은 국가기관이 사용자의 입장에 치우친 정책결정이나 노동관계법령 개폐시 파업 등 쟁의행위 이외에는 특별한 압력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면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정치파업적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적어도 특정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은 순수정치파업과는 달리 최소한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입법이나 정책에 관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정치파업이분론의 입장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견 파업의 정당성

이견 파업은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하여 이를 철회 내지는 무효화하기 위한 파업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경제적 정치파업

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목적에 있어서도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번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항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정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형사상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파업에 참가한 모든 근로자들은 형사상 면책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피의자 또한 업무방해죄 내지는 업무방해 교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형법 제314조가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들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피해자, 즉 구성요건에서 '사람'이란 범인이나 범인격 없는 사단등 단체도 가능하다는데는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단체의 업무는 곧 그 단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람의 업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이루는 범인들의 위력에 의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이 업무를 방해당함으로써만 궁극적으로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인이나 단체란 그 자체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단체를 이루는 개

인과 분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체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단체를 이루는 개인의 업무가 방해되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부담자, 즉 업무의 궁극적인 주체가 단체일 경우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을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단체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당한, 자유의사를 가진 구체적 사람이 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개념상 당연한 것이다.

다. 한편 기업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자가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의무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는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 형법에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혹은 일하지 않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별로 형사적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 노무제거부는 근로자가 그들 스스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등이 사용될 경우도 있겠으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 형사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파업과 별개의 위법행위이며 파업 그 자체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거부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과 파괴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행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업, 즉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 역시 개별적 노무제공거부와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무제공을 거부하는가 여부를 근로자들 개개인이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한, 한 개인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하였다고 하여 위법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집단적으로 노무제공 거부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마. 국제사회에서 국제관습법, 즉 헌법 제6조 1항이 말하는 바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05호 강제노동폐지조약은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강제노동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제1조 d항).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지 노무를 집단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뿐인 파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되는

사법상의 문제일 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제공거부일 뿐인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파업을 처벌한다면 이는 곧 형사처벌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곧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1007조) 제11조가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같은 뜻이다.

바. 따라서 이견 파업이 목적에 있어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에 불과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부당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구속사유 부존재

피의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없고, 또한 민주노동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인으로서 수시로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는 쟁의행위중에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견 쟁의행위가 끝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결국 피의자에 대한 이견 구속영장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1997. 1.

위 피의자의 변호인

사업 및 업무보고 (96년 12월 1일 - 97년 1월 31일)

1. 모임을 주요활동보고

- 가. 11월 정기 월례회 및 임시총회 개최 / 11. 29 (금) 저녁6시반 민변사무실
 - [독도 영유권 문제] 초청 강연 / 정인섭 교수 (서울대 국제법)
 - 신입회원 가입승인 / 윤학, 정웅대, 조상희 변호사
 - 제9차년도 중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민주적 개정 촉구를 위한 교수. 변호사 거리행진 참가 안내 / 이원재 노동위원장
- 나.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에 대한 의견서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송부 / 12. 3 (화)
- 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 성명 발표 / 12. 4 (수)
- 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변호인단(164명) 구성 및 기자회견 / 12. 12 (목)
- 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학단협 주관, 민변, 참여연대, 민교협과 공동개최) / 12. 14 (토) 오후2시 변호사회관
- 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발족선언식 및 기자회견 / 12. 16 (월) 낮 10시반
- 사. 안기부에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 촉구서 발송
- 아.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안기부법개악안이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발표 및 각 참가단체 대표 국민회의 방문
- 자. 96년 12월 정기 월례회 겸 송년회 / 12. 27 (금) 저녁6시반 한국회관 법원점
- 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 농성 / 12월 30일 - 97년 1월 1일
 -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정국 대응 보고, 안기부법, 노동법 설명회, 인권영화상영 등
- 카.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관련 활동
 - 검찰의 민주노총 지도부 사전영장청구에 대한 민

- 변의 견해 및 영장 발부에 따른 민변 의견서 발표
- 민주노총지도부 변호인단(15명)구성(변호인단 의견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단 참석)
- 대국민 홍보 팸플릿 작성('국민 여러분 날치기 당한 안기부법 · 노동관계법에 무효판결을 내려주세요', 1만부 제작, 범대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배포)
- 대국민 홍보 책자 발간('독재의 명령을 파헤치며', 2천부 제작 배포)
- 날치기 관련 공보처 등 정보공개청구 2건
- 범대위 활동 참가(민주수호를 위한 1997인 선언, 전국사회단체 <500개단체> 비상연석회의참석, OECD · ICFTU 방문단과 만남)
-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관련 전국변호사 성명 발표(569명) / 97. 1. 15 (수)
- 타. 대학생인권연수교육의 건 / 1. 20 (월)~25(금) / 연수생 17명 참가
- 파.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 참여연대 공동주최 / 97. 1. 30 (목) 변호사회관

2. 변론배당

- 가. 8. 15 한총련 범청학련통일축전 사건 항소심
- 나. 박종대.이수영(독일유학생) : 독일 거주 김용무의 지시로 국가기밀 탐지.누설, 회합 / 이백수 회원
- 다. 문치웅 (명지대학원 2년) : 학생회 활동 - 국보 / 김기열 회원
- 라. 김기창 (성남청년회 회장) : 국민회의 당사 항의 방문 - 공무집행방해 / 조광희 회원
- 마. 이세휘 (경기대졸업) : 학생회 활동 - 국보 (항소심)
- 바. 민영우 (단국대 4년) : 집시, 국보 / 이석범 회원

- 사. 양희원 (조선대 3년, 군인) : 국보 / 최재천 회원
- 아. 신길용 (서총련 집행위원) : 국보 / 한정화 회원
- 자. 조영민 (조선대 4년) : 집시, 국보 등 / 정태상 회원
- 차. 권영길 : 집회거부처분이의제결취소 / 조광희, 정연순 회원
- 카. 홍성호, 박재영 : 1. 19 한양대 집회 - 집시 등 / 김진욱, 이인호 회원

3. 상임위원회 보고

가. 기획위원회

- 송년회 / 12. 18 (수) 저녁7시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나. 회원위원회

- 정웅태, 조상희, 윤학 변호사 회원 가입 승인 / 11. 29 (금)
- 제대에정군법무관 및 수료예정사법연수생 민변 오리엔테이션 개최 / 12. 6 (금) / 총 8명 참석, 백승헌 사무국장, 양영태 사무차장, 김석연, 김인회 회원 참석
- 고태관, 오승진, 장운영 변호사 회원 가입승인 / 1. 31 (금)
- 탈퇴 : 하죽봉, 김충진 회원

다. 출판·홍보위원회

- [이달의 민변] 발간
- 날치기 관련 홍보 팸플릿 「국민여러분 날치기 당한 안기부법·노동관계법에 무효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제작, 배포
- 날치기 관련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 안기부법·노동법 대응논리를 비판한다」 발간
- 민변홍보보로서 제작 진행중 (2월중 제작완성)

라. 대외협력위원회

마. 국제연대위원회

- 송년회 / 12. 20 (금) 신태평양횃집
- 정기회의 / 1. 21 (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유엔인권기구 및 활용개관 연구모임

*인권협

- 회의 : 1996. 12. 17 (화) 인권운동사랑방

4. 상설특별위원회

가. 노동위원회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민주적 개정 촉구를 위한 교수·변호사 거리행진(민교협과 공동개최) / 12. 2 (월) 낮10시 광화문종합청사 및 여의도 국회
- 정기회의 / 12. 4 (수) 노동법 개악저지와 민주적 개정 촉구를 위한 교수·변호사 거리행진 평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 작성
-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활동
- 전국적인 노동변호사 조직 구성을 위한 간담회 / 12. 7 (수) 오후 2시
- 정기회의 / 12. 11 (수) 서라벌
-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변호인단 구성 및 기자회견 / 12. 12 (목)
- 송년회 / 12. 18 (수) 저녁7시 서라벌
- 정기회의 / 1. 8 (수) 서라벌
- 정기회의 / 1. 15 (수) 서라벌
- 정기회의 / 1. 22 (수) 서라벌
- 정기회의 / 1. 29 (수) 서라벌

나. 언론위원회

- 법조출입기자과 간담회 개최 / 12. 4 (수) 저녁7

시

- 방송법 개정의견 청원 / 12. 4 (수)
-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에 대한 의견 국회 청원 / 12. 13 (금)
- [청소년보호법의 졸속 제정을 반대한다] 논평 발표 / 12. 14 (토)
- 선거비용공개실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선협과 공동)
- 안기부·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 촉구서 발송
- 정기회의 / 1. 20 (월) 저녁7시 민변사무실 - 1996년 활동상황 보고, 정보공개청구(안기부비디오테이프건, 날치기 관련 국회, 노동부, 공보처 청구한 것 등)보고, 97년 사업구상

다. 사회복지위원회

- 정기회의 / 11. 30 (토) 국민생활보호법개정안 검토 - 최저생활비의 법적 개념과 관련 (윤찬영 교수)

라. 경제정의위원회

- 정기회의 / 12. 3 (화) 저녁7시반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회원제 계약에 관한 현행 법제도에 관한 논의(최승수 회원)
- 정기회의 / 12. 17 (화) 저녁7시 최고집 / 96 활동결과보고 97년 활동계획 점검 및 송년회
- 정기회의 / 1. 7 (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97년 사업계획 논의
- 정기회의 / 1. 21 (화)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97년 사업계획 논의

마. 환경위원회

- 12. 5 (목) 저녁8시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원자력법 개정안 국회통과 보고(김호철), 이번 국회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원전이 자

- 치단체장의 건축허가 없이도 건설이 가능해짐을 논의하고 민변 차원의 대책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남부저유소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취소 소장 작성(양영태)
- 남부저유소 소장 제출 / 12. 13 (금)
- 송년회 / 12. 23 (월)
- 여천공단 관련자료 배포(오종한) 및 대응방안 논의, 여천공단과 관련하여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등으로 부터 자료입수후 대응방안의 구체적 논의,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관련 대응방안 논의, 시화호 방류금지가 처분 진행결과 보고(윤종현)

바. 사법위원회

- 정기회의 / 12. 17 (화) / 1997년 2월 예정인 대법관 임명에 관한 논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지에 대법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함, 행정법에 관한 논의, 회의일정 논의

5. 임시특별위원회

가. 북한 쌀 보내기 임시특위

- 본지 게재자료 참조.
- 정기회의 / 12. 3 (화) 낮12시 민변사무실 / 향후 계획등 논의
- 정기회의 / 12. 10 (화) 낮12시 민변사무실 / 향후 계획등 논의(WCC를 통해 북한에 쌀보내는 것을 최종 확인)
- 행정심판청구소장 통일원에 제출 / 12. 12 (목)
- 통일원의 쌀보내기에 대한 간곡한 유예 협조요청으로 유예조치
- 쌀보내기 사업재개 결정 및 보도자료 배포 / 1. 14 (화)
- 통일원, 대북 쌀지원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항 통보 공문 접수 / 1. 15 (수)

- 검찰의 쌀보내기 수사에 대한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배포 / 1. 17 (금)
- 서울지방검찰청의 출석요구서 접수(1. 17) 및 민변의 입장 보도자료 배포 / 1. 18 (토)

나. 5.18 특위

-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가칭) 발족식 최종 점검 / 12. 12
- 시민사회단체 9차 간담회 / 12. 2 (월) 저녁6시반 민변사무실
- 시민사회단체 10차 간담회 / 12. 12 (목) 저녁7시 기독교회관 2층 /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칭) 발족 선언식 점검
-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대표자 회의 및 발족선언식 / 12. 16 (월)
- 정기회의 / 12. 28 (화) 저녁6시반 민변사무실 /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업 논의
-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 1. 10 (금) 저녁7시 한국교회인권센터
-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 1. 24 (금) 저녁7시 한국교회인권센터

다. 민변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 정기회의 / 12. 2 (월) 저녁6시반 민변사무실 / 10주년 관련 사무국 보고, 민변 백서, 기획소송제기, 인권센터 개설택업, 인권핸드북, 인권교과서, 황인철·조영래 평전, 시국사건자료집발간의 건, 인권논문상 등 10주년 관련 사업 진행사항 확인
- 정기회의 / 1. 20 (월) 저녁6시반 민변사무실

라. 형사(무죄)사건 자료집 발간팀

- 발간 최종 점검 중
- 마. 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위
 - 민변 의견서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발송 / 12월 3일
 - '정보위원들에게 호소함' (장주영 회원) 송부 / 12월 13일
 - 날치기 관련 홍보 팸플렛 「국민여러분 날치기 당한 안기부법·노동관계법에 무효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기획
 - 날치기 관련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 안기부법·노동법 대응논리를 비판한다」 기획

바.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 특별위원회

- 정기회의 / 11. 29 (금) 민변사무실 / 임원선출 (위원장 안상운, 간사 김기중),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활동 보고(김기중), 민변특위의 활동방향 논의 / 황동계획(정보사회에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법률제정노력,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 등)
- 정기회의 / 12. 17 (화) 민변사무실
- 정기회의 / 1. 23 (목) /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 발표(정연순), 일본 주민등록대장제도의 도입 논의(임영화), 국제인권법에서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의제기절차(한택근), 통합전자주민카드 관련 경과와 국내 상황 소개(김기중)

사. 정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 / 1. 18 (토)
- CUG 폐쇄 및 정보통신위원회 확대개편 / 2. 5 (수)

성명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정부는 12월 4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경쟁력 확보와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활성화를 도우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내는데 노력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어불성설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서 국제적으로 노동탄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굴레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복수노조금지 조항, 제3차 개입금지 조항, 교사 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하며, 나아가 근로자 파견제 또한 빠른 시일안에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요구는 묵살되고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한 그 파격적인 과격성과 형평을 상실한 불공정성에 대하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지난 19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 노동부의 자문기구로 발족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1994년에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건의안보다도 더욱 후퇴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노개위의 공익수정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서 역사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데 대하여 개탄해 마지 않을 따름이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회복은 오간데 없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된 나머지 '개혁'이라는 이름은 무색한 채 '개악'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래야 버릴 수 없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곧바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터이고 그대로 강행, 입법으로 관철된다면 노동자들의 반발과 사기저하로 말미암아 국제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사회적 불안과 비용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후진적인 노동탄압국으로 여전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이에 민변은 정부에 대하여 반개혁적인 노동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노동법 개정이 원래 출발하였던 개혁의 관점으로 돌아가 본래의 의미를 살려 노동법 원리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맞는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향상하는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6.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영 도

편집자 주 : 모임에서는 신한국당에 의하여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지난 1996년 12월 30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여 '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취지문과 1997년 1월 1일 시한부 농성을 마치고 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모임에서는 3일간의 농성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절차적, 내용적 잘못과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결 의 문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신한국당에 의하여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지난 12월 30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3일간의 농성을 마치면서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날치기통과 이후 즉각 전개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업 그리고 재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날치기통과가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약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정부와 여당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예상되었던 국민들의 저항과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느니, 또는 이 법안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니 하는 억지논리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더욱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깊은 논평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날치기통과가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생존권등 기본적인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의결이 무효이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임을 자인하고 순리에 따라 사태를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김영삼대통령, 국회부의장 등 정부와 여당의 고위인사, 그리고 이에 따라 부끄러운 거수기 노릇을 마다하지 아니한 이른바 대권주자를 비롯한 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응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사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로 퇴행을 거듭하며 파시즘에 접근해가는 정부와 여당의 반민주적인 행태의 일환인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 기타 정치적 변화과정에서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 우리는 사태의 중대성에 공감하여 시작한 시한부 철야농성을 마치고 장기적인 저항과 국민불복 종운동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들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거듭 확인 하며 정부와 여당의 배신과 폭거에 분노하고 절망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저항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 하는 바이다.

1997. 1.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변호사성명

지난 12월 26일 새벽 6시 이른바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이 국회에 모여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안을 단 7분만에 날치기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였으며 군사독재 정권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만행이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봉쇄하므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강변하나, 아무런 토론도 타협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이미 무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법의 개정은 대북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그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해 온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것임은 굳이 법률가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 법안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신한국당은 본래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는 본회의를 야당 의원들과 협의도 않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변경하고, 국민의 이목마저 속인채 새벽에 국회로 숨어들어가 나라의 앞날을 바꿀 법안들을 7분만에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날치기통과는 회의일시의 변경을 협의하거나 통지할 것을 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둘째,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으로서 무효이다. 날치기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견해를 확인하고 협의한 후에 표결을 하여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였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결국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과하였을 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셋째,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안기부법을 고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안기부는 형법상 내란죄 등 주요 범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뿐 아니라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그리고 편의제공 등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개혁작업의 하나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군사독재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던 안기부의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전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찬양·고무죄와 불고

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3년만에 날치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켜 스스로 개혁정권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등은 그동안 정말로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19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노동관계법법안은 물론이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공의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는 그 동안 계속하여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등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규범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대체근로허용 등을 골간으로 하는 이번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켜, OECD 노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노동법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항의공문을 받는 등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이번 날치기통과가 절차적으로는 국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두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정부와 신한국당에 엄숙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는 바이며, 안기부법은 개정용 포기하고, 노동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성명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다.

— 권영길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의 견해 —

1997.1.10. 법원은 현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총파업을 지도하고 있는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이 1997년 1월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한 다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법원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가 단순한 강제수사를 위한 준비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정부조치의 신호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혐의사실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노동법에 대하여 항의하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각자의 양심적 결단에 따라 자기의 업무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검찰은 성립할 수 없는 범죄로 이들을 단죄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권영길 위원장 등이 검찰의 소환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심문에도 불참한 것은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자 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을 지도하는 지도부로서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업투쟁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은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파업투쟁을 자제할 것을 호소하여 왔다. 만일 이들이 지도부의 자리를 비운다면 치열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력과 노동자들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민, 나아가 전세계의 시선을 한눈에 받으면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디론가 도망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들 스스로도 수십만 노동자의 지도부로서 도망갈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번 파업투쟁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권영길 위원장 등이 증거를 인멸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 역시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영장발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합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기회로 강경진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등에 대한 전면 재개정 작업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7년 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편집자 주 : 이 자료는 모임에서 이번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그것의 반민주성과 악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날치기 당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에 무효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단 7분만에 짓밟힌 민주주의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은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에 모여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안을 단 7분만에 날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 땅에 평화와 은총을 기원하는 성탄절 다음날, 국민들 대부분이 성탄의 축복을 바라며 단잠을 자고 있던 시각에 여당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야당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며 전화로 연락을 하고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숨어들어가서 민주주의를 도둑질하는 날치기를 자행한 것입니다. 말끝마다 21세기를 떠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여당의 대통령후보들도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도둑고양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21세기의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안기부와 제벌의 힘을 빌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날치기를 한 후 야당이 무조건 봉쇄를 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론도 타협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이미 무시한 것으로 야당으로서는 봉쇄밖에 택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두 법안은 그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해 온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폭거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국민을 앞잡아보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날림공사를 뜯어고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첫째,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신한국당은 본래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는 본회의를 야당 의원들과 협의도 않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새벽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라의 앞날을 바꿀 법안들을 7분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날치기통과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또 이것은 회의일

시의 변경을 협의하거나 통지할 것을 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아니 국회법을 들먹거리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반장선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따를 아이들이 없고, 동네 반상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간에 싸움이 납니다.

둘째,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으로서 무효입니다

날치기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견해를 확인하고 협의한 후에 표결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쿠데타적 만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려면 여당 의원들끼리만 전화로 연락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그만이지 수고스럽게 꼭두새벽에 국회에 모이기는 왜 모였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일을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의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깰까 무시한 이번 날치기 통과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자기 의견에 따르게 하는 군사독재정권이나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는 허울좋은 문민정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는 김영삼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입니다.

결국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과하였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 포기선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안기부법을 고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예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예가 없으며 현재 안기부는 형법상 내란죄 등 주요 범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 뿐 아니라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그리고 편의제공 등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다른 사건의 두 배인 20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보안정보수집, 배포, 국가기밀에 관련된 보안업무 등 국가 전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전체 액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등 이미 충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개혁작업의 하나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던 안기부의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전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3년만에 날치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켜 스스로 개혁정권임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정권은 지금 안보가 약화되었고 따라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야 효과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은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현 정권 아래에서도 안기부가 여전히 국내문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관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북한이 좋다고 찬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할 말을 떠들고 다닐 간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등은 그동안 정말로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교수님과 문필가 그리고 예술가조차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된 바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보문고, 종로서적에서도 판매하는 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읽었고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기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안기부가 국민들의 말과 양심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간첩 운운하며 국민을 안기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안기부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안기부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과거의 악명에서 벗어났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지지자연기음모, 박충렬 사건, 김형찬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정치관여나 가혹수사는 여전합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기부 직원의 숫자만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이러한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군사독재시절처럼 대대적인 인권유린과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초래되고, 공작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정치를 바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안기부의 감시와 탄압을 통하여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지난 대선때 초원복국집에서 유치하게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던 박일룡 경찰청장을 국내정치를 담당하는 안기부1차장에 임명한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날치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한 신한국당의 소위 대통령 후보군들은 이런 개악된 법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보다도 더 후퇴한 노동법으로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198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노동관계법안은 물론이고 흔히 노개위라고 불리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정부안보다도 더욱 후퇴한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조차 우려를 금하지 못할 정도로 개악된 것입니다. 원래 지금의 노동법은 한국전쟁중에 만든 것입니다.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던 시절에, 그것도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노동법입니다. 이 노동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피땀흘려 일을 해서 지금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와서 한국 전쟁 때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노동법 아래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연장수당도 못받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내몰려야 합니까? 그러다가 '필요'가 줄어들면 언제든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내쫓겨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김영삼정권이 말하는 세계화입니까?

ILO에서는 그 동안 계속하여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등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규범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김영삼 정권은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따라 그리고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OECD가입 이전에 결사의 자유(복수노조 금지)나 단체협약과 깊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이번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OECD 노동자문위원장으로 부터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노동법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항의공문을 받는 등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첫째, 이번 노동관계법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절차가 까다롭게 된 것처럼 말하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 사유나 요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경영형태를 부추길 따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자식이 힘들게 일을 하여 부흥시킨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기술 도입이다, 구조개편이다하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없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노동관계법은 변형근로시간제를 허용하여 임금을 실제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은 고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과 노

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 뿐 아니라 산재와 직업병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이번 노동관계법은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존립근거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행사하여도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파업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 자체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동력은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공정한 법칙에 의하여 운영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결국 날치기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고사하고 봉급생활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인한 사회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달의 민변 97년 1·2월 합본호

발행일 97년 2월 2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차병지 박원순 조응환

박성호 이백수 백승현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CUG (GO MB)

나우누리·하이텔 minbyun7